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한 통상마찰에 대한 해소방안 연구

The image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in the background. The logo is circular, containing a stylized flame or leaf design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round the perimeter and 'JEJU 1952' in the center. Overlaid on this watermark is the text '제주대학교 대학원'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라문무

2011년 2월

중·한 통상마찰에 대한 해소방안 연구

지도교수 이 용 완

라 문 무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라 문무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 2 장 WTO 가입 후 중·한 통상정책 및 변화	5
제 1 절 통상정책과 통상마찰의 개념	5
1. 통상정책의 개념	5
2. 통상마찰의 개념	7
제 2 절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10
1. 중국의 통상정책	10
2.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12
제 3 절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	15
1. 한국의 통상정책	15
2.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	17
제 3 장 중·한 간 통상마찰의 현황과 사례	19
제 1 절 중·한 교역현황 및 발전과정	19
1. 중·한 교역현황	19
2. 중·한 교역발전의 과정	22
제 2 절 중·한 통상마찰 현황 과 원인	23
1. 중·한 통상마찰의 현황	23
2. 중·한 통상마찰의 원인	25

제 3 절 중·한 통상마찰의 사례분석.....	28
1. 중·한 농산물 통상마찰 사례.....	29
2. 중·한 간 반덤핑 사례.....	33
3. 지적재산권 마찰.....	42
4. 자동차 통상마찰 사례.....	43
5. 신용장 및 서류하자관련 마찰.....	45
6. 대금회수 관련 마찰.....	46
7. 기타 통상마찰 사례.....	47
제 4 절 중·한 통상마찰 사례의 시사점.....	49
1.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추이.....	49
2. 고부가가치 수출 전환 노력.....	49
3. 수출선 다변화 등 포괄적 수출전략의 수립.....	49
제 4 장 중·한 통상마찰에 대한 문제점.....	50
제 1 절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문제.....	50
1. 무역적자 현황.....	50
2. 무역적자 요인.....	51
제 2 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53
1. 수출증가율 둔화추세 현황.....	53
2.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	54
제 3 절 중·한 무역장벽 문제의 심화.....	56
1.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56
2. 양국간의 덤핑·반덤핑 확대 문제.....	58
제 4 절 중·한 상호 투자현안과 과제.....	59
1. 중국 외자유치 전략의 변화.....	59
2. 임금 등 비용상승과 인민폐 평가절상.....	60
3. 산업공동화 및 기술유출의 문제.....	61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촉진 정책.....	62

제 5 장 중·한 통상마찰의 해소방안.....	64
제 1 절 중·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방안	64
1. 중국의 해소방안.....	64
2. 한국의 해소방안.....	66
3. 중·한 공동협력해소방안.....	69
제 2 절 중·한 공동통상협력방향.....	72
1. 기존의 중·한 통상협력현황.....	72
2. 중국 WTO 가입 후 중·한 통상협력의 방향.....	78
제 6 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ABSTRACT	89



<표 목차>

<표 2-1> 국제통상 관련마찰의 형태.....	9
<표 2-2> 중국 FTA 추진현황.....	11
<표2-3> 중국의 WTO가입시 양허조건과 시장개방일정	13
<표 2-4> 한국 FTA 추진현황.....	16
<표 3-1> 중국의 대한국 무역규모 추이 (단위:억 달러).....	22
<표3-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변화	27
<표3-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 변화	27
<표 3-4>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34
<표 3-5>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34
<표 3-6> 중·한 반덤핑 품목 리스트	37
<표 3-7> 한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38
<표 3-8>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39
<표 3-9> 중국의 한국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표사례	43
<표 3-10> 2009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 (단위: 만량, %)	43
<표 3-11> QQ 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만량,)	44
<표 4-1> 1992-2009년 중·한 무역 통계 (단위: 억 달러).....	50
<표 4-2> 한국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53
<표 5-1> 주요품목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67
<표 5-2> 아세안 지역의 FTA 진행상황	70
<표 5-3> 한국 대중국 투자추이(단위:건수, 천 달러).....	74

<그림 목차>

<그림 3-1> 한국산 신문용지 대 중국 수출추이 (단위:천 달러).....	35
<그림 3-2>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대 중국 수출추이 (단위:천 달러).....	36
<그림 3-3> 중국산 전기면도기 수입추이 (단위:천 달러).....	40
<그림 3-4>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수입추이 (단위:천 달러).....	4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중국은 최근 주요 세계시장에서 연이어 통상마찰에 휘말리면서 무역방식의 전환과 함께 수출산업 구조의 획기적 재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 증대, 중국시장의 수출확대 가능성, 대 중국 수출확대 예상품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TV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과 EU의 수입 자동차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마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상품이 전 세계에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와 견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통상마찰은 그런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적 시각이다.

WTO 회원국이 제소한 반덤핑 사례의 약 17%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이 제소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를 비롯하여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 화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중국 상품으로 국내산업이 교란되고 있으며 무역 중재 및 구제조치를 위한 조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로 소진할 수밖에 없어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반덤핑 대상국이 되는 구조적 여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그동안의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는 것이다.

양국은 1992년 공식 수교한 이래 경제무역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오늘날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50.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861.1억 달러에 달하여 수교 당시에 비하여 37배 증가하였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3위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 상대국이자 제1위 수출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중·한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액 목표치 2000억 달러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³⁾. 한편 중·한 무역은 최근 들어 양국의 무역정책과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양국간의 상호 투자도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양국 무역 불균형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적자 심화,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추세, 무역장벽, 양국의 덤핑과 반덤핑 등 상호 투자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무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 언급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중·한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무역을 현 단계에서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제도적 협력과 FTA의 추진을 통하여 양국간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양국의 무역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한 양국의 무역구조를 조정하고 상호 투자 추진 조치를 통하여 적자를 축소하고 상호간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통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시장 개방 확대 및 보호무역조치의 철폐를 둘러싼 양자간 통상현안이 증대할 것이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규제가 강화되어 중·한 통상 마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마찰 또는 마찰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결국 통상마찰은 각국의 정책이 통합·조정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정책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므로 당사국으로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겪은 중국과의 통상마찰 사례들을 보면 마찰이 발생했을 때, 국내 정부 부처간 협조가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으나,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협조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후 사실상 첫 통상마찰 사례인 중국산 마늘마찰은 정부와 기업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마늘마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보다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산 김치마찰 역시 중·한 양국정부가 무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양국의 통상당국자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농산물 통상마찰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자이다. 중·한 간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법의 모색은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 중·한 통상마찰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중·한 통상의 현황 및 추세에 따르는 중·한간의 통상마찰에 한정하며, 분석 대상, 분석 기간은 중·한 수교이후 현재까지로 한다.

본 연구는 중·한 통상마찰의 문제점의 인식과 그의 해소방안 및 양국의 통상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한 통상마찰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와 통상마찰에 관한 선행연구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양국 정부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진 중·한 통상마찰과 통상정책에 관한 단행본 및 논문들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률 설명하였다.

제2장 중·한 WTO가입 후 통상정책 및 정책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제3장 중·한 간 통상마찰 발생의 원인과 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양국 통상마찰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한다.

제4장 중·한 통상마찰의 문제점 4가지를 거론했다.

제5장 문제점에 대한 중·한 양국의 해소방안과 중·한 통상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6장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제 2 장 WTO 가입 후 중·한 통상정책 및 변화

제 1 절 통상정책과 통상마찰의 개념

1. 통상정책의 개념

가. 통상정책의 의의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 or trade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때 무역과 통상이라는 용어의 차이 때문에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번역상의 차이 이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으며, 여기서도 동의어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역정책이라고 할 때는 무역과 관련한 국내제도와 관행을 변경시키거나 수출과 수입을 장려 또는 억제하는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고, 통상정책은 국가간 통상 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 전략적 차원의 입장 수립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통상정책은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통상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외 정책에 속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내 정책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제무역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의 개념과 통상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외교정책과 또 다른 경제정책과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¹⁾

어떤 국가이든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대외적으로 경제거래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이 바로 통상정책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이란 한 나라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양국간 혹은 다국간 무역관계의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즉, 자국의 산업정책과 비교우위체제를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특수성 및 여건변화와 세계경제 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한 나라의 대외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1) 조영정,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9, pp220-230.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무역업자가 행하는 수출입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정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 수입초과인 때에는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게 되고, 수출초과인 경우에는 반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통상정책은 경제발전목표와의 부합, 통상관련 제반 국내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자국경제의 세계적 위상변화에 따른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자국경제와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연결시키게 된다.

나. 통상정책의 범위

통상정책은 양국간 혹은 다국간 무역관계에 영향을 주는 시장개방, 수입규제완화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 제반정책을 망라하고 있다.²⁾

종래는 주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이 주된 통상정책의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환율, 내수확대 등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정책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정책의 의사결정요소에는 대내외적 여건변화, 사회·경제적 배경, 정책결정기구, 무역·산업정책과의 관계, 국민적 합의 등이 그 변수가 된다. 또한 경제·무역규모가 왜소한 상태에서는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위주의 통상정책결정이 중심이 되나 경제·무역규모가 확대될수록 대내외적 여건변화 및 내생변수화, 사회·경제적 배경의 투영, 정책결정기구의 체계성·민주성, 국민적 합의도출 등의 요인들을 중시하게 된다.

그런데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상정책은 경제발전목표와의 부합성, 즉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가령 종래 한국의 경제발전목표인 양적·불균형적 수출중심의 고도성장전략상의 무역확대는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통상정책과 경제발전 목표와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적정 균형적 성장전략하의 질적 무역확대와 개방협력의 중시는 상호의존적인 통상관계 정립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무역·산업정책과의 관계를 보면 양국정책은 통상정책의 대내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다. 무역정책과는 무역의 대내외적 관계로서 밀접하게 연결되며, 산업정책의 목표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립적 산업구조조정이 통상 정

2) 鲁丹萍, 对国际贸易壁垒的相关研究, 人民出版社, 2009, p116.

책의 수단을 강화하고 시장개방 등 통상정책의 내부수용력을 높여 줌으로써 무역정책은 산업정책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들 정책간의 일방적·수동적 관계는 외부압력과 내부압력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대내적으로는 무역정책·산업정책의 왜곡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통상마찰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상마찰(통상분쟁)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통상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특정 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진출의 급격한 증가로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의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성의 확대,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거나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의 대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상 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이나 분쟁의 현상은 초기에는 개발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차 제도·관행 및 관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나라마다 규제조치를 취하고, 상품거래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금융, 직접투자 등 경제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마찰은 관련 마찰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크게 개별당사자간의 마찰과, 개별당사자와 국가간의 마찰, 그리고 당사국간의 마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첫째, 개별당사자간의 통상마찰은 개별당사자간의 국제통상마찰은 마찰이 개별기업과 개별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양한 국제통상활동 중 주로 국제계약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제계약에는 물리적 재화의 교역과 관련된 국제물품계약, 기술교역과 관련된 라이선스계약, 생산설비건설과 관련된 턴키베이스 계약, 두 기업이 각각 출자하여 제3의 회사를 만드는 합작투자계약 등이 있다. 다만 개별 기업들간의 국제통상마찰의 국적이 서로 상이한 기업들간의 마찰뿐만 아니라 마찰

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2010, p197.

당사자간의 관련활동이 국제성을 나타낼 경우 동일 국내의 기업들간의 마찰까지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개별기업들간의 국제통상마찰은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 계약을 위반할 경우 주로 발생된다. 개별 기업들간의 국제통상마찰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 및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둘째, 개별당사자간과 국가간의 통상마찰은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마찰은 개별기업과 국가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참여를 목표로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공익사업이나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해 국가와 외국 투자기업간에 체결되는 국제양허계약 등에서 발생된다.

이와 같은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마찰은 계약위반에 따른 개별기업들간의 마찰과는 달리 대부분 특정당사자, 특히 국가의 계약위반 및 일방적 조치에 의해 발생된다. <표 2-1 참조>

다만 국제양허계약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제마찰 역시 앞에서 살펴 본 개별 기업들간의 국제통상마찰 해결방법과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⁴⁾

셋째, 당사국간의 통상마찰은 국가들간의 국제통상마찰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통상 관련기구(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간의 마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마찰, 그리고 비회원국들간의 마찰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들간의 국제통상마찰은 특정국가가 자국의 통상관련법, 규칙,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국제통상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발생된다. 국가들간에 국제통상마찰은 일반적인 국가간의 마찰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수단, 국제기구, 국제중재, 국제재판, 그리고 국제통상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찰 해결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4) 宋世方, 贸易保护政策的新政治经济学分析, 山东经济出版社, 2008, pp45-50.

<표 2-1> 국제통상 관련마찰의 형태

	마찰의 대상	마찰당사자	마찰원인	마찰해결방법
국제통상이동 형태별 분쟁	국제계약 · 물품매매계약 · 합작투자계약 · Licensing Franchising 계약 · 국제양허계약 · 경영관리계약 · 국제하청생산계약 · Turn-Key Base 계약 · 국제 Consortium · 해외건설계약	개별기업 대 개별기업 개별기업 대 국가	· 계약당사장중 일방이 계약의 무불이해 (계약위반)	· 청구권포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국제투자 · 해외직접투자	개별기업 대 국가	투자수요국의 특정조치가 외국투자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수용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몰수, 국유화)	· 청구권포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 외교적보호
세계무역기구상 마찰	· WTO 설립협정 및 무역협정	회원국 대 회원국	· 특정회원국의 협정의무 위반	· WTO 마찰 해결절차에 따라 협의, 알선, 패널, 상소, 조정, 중재 · 외교적노력

자료: 김선광 외 3인, 전개서, 동성사, 2009

제 2 절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1. 중국의 통상정책

중국은 WTO가입 이후 전반적인 무역관리제도 및 정책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커지면서 선진국이 중국에 가하는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중요성 인식과 함께 중국 역시 중요국과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무역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통상정책제도와 국제적 통상관련 제도와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조화로운 융합발전, 그리고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둔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 약속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통상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 무역관리의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산업과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외무역 관리체제는 이전의 관리체제와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1) 무역관리의 국제화 추진

중국은 국제기구 가입과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해 무역관리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중국의 FTA 추진행보도 빨라져 ASEAN, GCC, 칠레와의 FTA 협상이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 11월 29일 ASEAN과 관세인하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까지 협정안에 따라 단계적 관세인하 및 철폐에 공식 합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상품분야의 관세인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까지 ASEAN 6개 선발국과, 2015년까지는 4개 후발국들과 자유무역지대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 가입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무역관리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5) “中国加入 WTO 以后, 中国贸易摩擦变得深化的原因和对策”, www.chinaknock.com.

<표 2-2> 중국 FTA 추진현황

발효된 FTA	서명 및 협상 타결된 FTA	협상중인 FTA	협상준비중인 FTA
중, AEEAN(05.7.20) 중, 뉴질랜드(08.10.1) 중, 싱가포르(09.1.1) 중, 칠레(06.10.1) 중, 파키스탄(09.10.10) 중, 홍콩(04.1.1)	중, 페루(09.4.28)	중, GCC 중, SACU 중, 아이슬랜드 중, 코스타리카 중, 호주	중, MERCOSUR 중, 남아공 중, 대만 ECFA 중, 스위스 중, 인도 RTA 중, 한국 중, 한,일

자료: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2010

(2) 무역관리 수단의 강화

중국정부의 관세인하와 수입허가 및 쿼터품목의 축소 등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인해 무역관리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WTO가입이후 중국의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가 무역마찰과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점진적인 절상을 허용하는 등 환율에 의한 무역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⁶⁾

(3) 국내외 무역 간의 통합발전

최근 중국은 국내산업과 대외무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융합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무역과 외국인투자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대외 무역경제 합작부를 상무부로 개편하여 무역과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 이외에 국내산업과 상업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였다. 이러한 것은 국내산업과 대외무역간의 통합 관리를 통해 융합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 내포되어 있다.⁷⁾

6) 양평섭, 중국의 WTO가입 5주년결산, KIEF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58.

7) 서갑성,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전개에 따른 중·한무역 활성화방, 한국비즈니스 리뷰 제 2 호, 2008, pp76.

2.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중국은 1986년 처음으로 WTO의 전신인 GATT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으나 가입 조건에 대해 기존 회원국가들의 의견차이로 실패하고 1995년 새로 출범한 WTO 가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01년 11월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대외 인지도가 향상되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잇점을 누렸지만, 가입 협상시 약속대로 무역장벽을 허물고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WTO가입 이전에는 중국이 비록 회원국이 되기 위해 관세인하, 쿼터수입허가품목 축소 등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국내산업 보호라는 통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외부적인 간섭 없이 자의대로 통상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WTO가입 약속사항을 이행하면서 통상목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정에 한계성이 존재하고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띤 통상정책을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중국이 무역부문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현행 17%에서 9.4%로, 수입상품 평균관세율을 2010년까지 9.8%로 낮추기로 되어 있다. 또한 2004년까지 모든 기업에서 대외무역권을 부여하고 2006년까지수입허가증 관리제(현행35종 373개 품목)와 수입쿼터제(현행 28종 245개 품목)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2-3참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WTO가입이후 네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단행했는데, 2004년에는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9.5%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수입상품 평균 관세율이 9.9%로 낮아져서 약속이행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 경영권도 지속적으로 분산되어 왔는데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개인도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석유·곡물·비료·면화·설탕 등 전략 비축물자의 수입을 일반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규제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5년에는 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이 크게 3 종류 83개 품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06-2008년까지 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각각 16.77%, 15.63%, 8.53%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2-3> 중국의 WTO가입시 양허조건과 시장개방일정

분야별	합의내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과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각각 9.4%, 17%로 인하 - 옥수수·쌀 등에 대한 수출보조금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수입허가증 관리제를 2006년까지 폐지(현행 35종 373개 품목) - 2004년까지 모든 기업에서 대외 무역권 부여 - 수입쿼터제를 2005년까지 폐지(현행 28종245개 품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가입 후 지점설치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WTO가입 후 각각 2년내 및 5년내에 외국은행에 대해 중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소매금융 영업허용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가입 즉시 생명보험 50%손해보험, 재보험 51%까지 합작투자 허용, 2년 이내에 전액출자 허용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펀드 운영회사에 대해 중국기업과의 합작 펀드운영회사설립 허용(외국기업은 합작증권사를 통해 중국기업에 서비스 제공, 외국인인 합작법인에 소액주주로 참여하여 중국 국내주식 및 채권의 인수와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등에 참여)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WTO가입즉시 49%까지, 부가가치통신 2년 이내에 50%까지 합작투자 허용 - 위성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개방 (외국인 투자한도 2003년 25%, 2005년 35%, 2006년 49%로 상향조정)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가입 후 3년 이내에 운수, 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폐지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가입 후 3년 이내에 호텔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투자 및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수입 허가시 기술이전, 국산사용 의무사용 의무비율, 등의 조건 폐지

자료: 한국산업은행조사부, WTO 가입이후 중국신산업정책과 대응방안. 2008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수출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관리체제를 국제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조선·자동차·가전 및 부품 등 11개 자본 기술 집약산업에 대해 수출환급세율 17%를 적용하고 다른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여 차별화에 의한 수출제품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수출허가증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관리, 수출허가증 등 3종류로 구분해서 수출체제의 간결화를 꾀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섬유쿼터 폐지로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마찰 해소차원에서 6개 품목에 수출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부문에서 WTO가입 후 2~3년 내에 외국은행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영업, 독자보험회사 설립, 위성산업에 대한 투자, 호텔에 대한 단독 투자 등을 허용하고, 운수·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제한을 폐지하며, 투자 및 수입 허가시 기술이전, 국산사용 의무비율, 수출이행 의무비율 등의 조건을 폐지하는 약속을 했다. 이에 <표2-3참조> 대해 중국정부는 점진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표방함에 따라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 여해 왔던 세제의 우대조치를 점차 폐지해 나갈 예정인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을 개정하여 장려품목 투자기업과 첨단기업에 한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⁸⁾ 이러한 조치가 외자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정책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1997 년 이후 최근까지 위안화를 달러에 폐기시키는 사실상의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 왔다. WTO 가입 후 무역규모와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대외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위안화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리고 대내적으로 경기과열 조짐과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일관해 왔다.

8) 한국수출입은행, 중국투자우대정책, 2005, pp1-3.

제 3 절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

1. 한국의 통상정책

1998년 한국 정부가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개방적 통상정책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양자관계에 기초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부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참여하여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양자간 FTA를 통한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던 상황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1998년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한국 정부는 WTO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노력과 병행하여 FTA를 기초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FTA가 기존 WTO다자협상과 비교하여 협상 대상국을 선택할 수 있고, 협상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⁹⁾

실제로 한국 정부가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주로 제기되어왔다. 첫째, 'FTA 대세론'이다. 이에선 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¹⁰⁾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다자교역체제의 한계가 나타났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미진하게 진행되어온 다자차원의 교역자유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양자협상을 통한 지역 간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경향이 확대되어왔기에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른 경쟁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9) 김현중, 왜 FTA 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 제 2 권, 2008, pp3-9.

10)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 4 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해외의 주요 시장을 경쟁국에 의해 선점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소외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¹¹⁾

둘째, 이른바 ‘샌드위치론’이다. 세계시장에서 BRICs¹²⁾국가 등 개도국의 부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의 입장에서 개방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다. 이에 FTA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고, 각종 국내 제도를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¹³⁾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방적 통상정책은 WTO 다자간 협상인 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양자관계에 기초한 FTA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표 2-4> 한국 FTA 추진현황

발효된 FTA	서명 및 협상 타결된 FTA	협상중인 FTA	협상준비중인 FTA
한,칠레(04.4.1)		한,캐나다	한,일본
한,상가포르(06.3.2)		한,멕시코	한,중국
한,EFTA(06.9.1)	한,미국(07.6.30)	한,GCC	한,중, 일
한,ASEAN	한,인 CEPA(09.8.7)	한,호주	한,MERCOSUR ¹⁴⁾
상품(07.6.1)	한,EU(09.10.15)	한,뉴질랜드	한,러시아
서비스(09.5.1)		한,페루	한,이스라엘
투자(09.9.1)		한,콜롬비아	한,SACU ¹⁵⁾

자료 :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2010

11) 강문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CFE Report No.103, 2009, pp19-22.

12) 브릭스(BRICs:British, Russia, India, China)는 2000 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13) 방청록, 한국의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아태연구 제 16 권 제 1 호, 2009, pp84-85.

2.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

WTO 각 회원국들의 관세율을 1986년에 대비하여 33%이하하고 관세양허품목도 확대하고 일부공산품에 대한 무관세화 또는 관세조사 등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양허한 범위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관세율도 1~4% 수준인데, 한국은 무관세화 대상 8개 분야 중 맥주와 증류주를 제외한 6개 분야(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가구, 농업장비)에 대부분 참여하고, 관세조화대상인 196개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192개 품목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 UR협상을 통하여 WTO에 관세양허를 하였는데 양허품목수는 10,502의 91.2%인 9,680품목이고, 평균 관세양허세율은 WTO의 최저목표인 33%를 초과하는 54.2%의 관세인하를 하였다.

회원국들은 정상가격산정시 원가 이하판매의 부분적 인정과 제조자격기준의 계량화와 노조의 제조자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구성가격산정시 실제자료에 근거한 이윤을 산정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각각 가중평균별 혹은 거래별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인정하였다. 한편, 덤핑마진에서 제외되는 최소기준을 인정하여 덤핑마진은 2%미만, 시장점유율은 국가별 3%미만 및 합계 7%미만 등을 규정하였으며 반덤핑조치의 자동소멸시효(5년)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반덤핑 제도를 관세법 10조의 반덤핑관세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WTO 반덤핑협정의 이행을 위해 1994년 12월 31일 관세법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WTO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를 통한 포괄적인 시장개방과 국내 농업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가격차인 관세 상당치는 이행 기간(7년, 개도국 10년) 동안 산술평균 36%, 품목별 15%(개도국은 각각 24%, 10%)로 감축하였다. 한국은 쌀의 경우 10년의 관세화유예기간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의 최소시장접근비율은 1~4%로 설정하였다.

국내보조금과 관련하여 가격지지 및 생산과 관련된 직접보조 등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7년간 20%를 감축해야 한다. 단, 감축대상 보조가 총생산량의 5%미만일 경우에

14) MERCOSU (Mercado Comun del Sur, Mercado Comun do Sul) : 중남미공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15)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

는 감축을 면제한다.

WTO협정에 의하면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정부의 직접보조, 저가수출, 유통비용 및 수송비지원 등 수출보조금은 7년간 물량 기준 21%, 금액기준 36%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시장개방, 국내 산업보조, 수출보조의 각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기간은 10년, 감축폭은 선진국의 2/3수준을 인정받았다.

WTO는 최혜국우대원칙을 일반적으로 준수하나 수량 제한시에는 예외적인 특별한 영조치를 허용한다. 또한, 회색 조치는 4년 내에는 철폐 및 금지 하기로 하여, 세이프가드조치 최초 발동 후3년간은 보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동기간 동안은 보 상 없이 이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개별물품의 수입시장비중이 3%이하인 개별적 개도국과 그 개도국으로부터 총수입비중이 9%이하일 경우에는 동개도국에 대해 발동을 금지한다.

16) 张汉林, WTO 主要成员贸易政策体系与对策研, 经济科学出版社出版, 2009, p34.

제 3장 중·한 간 통상마찰의 현황과 사례

제 1절 중·한 교역현황 및 발전과정

1. 중·한 교역현황

가. 중국의 대 한국 무역의 발전현황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제교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초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은 규모가 매우 작았다. 1978년의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이 개혁개방한지 31년째인 지난 2009년에 국내총생산(GDP)이 49.1조 달러에 달하고 GDP 기준으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2005~2009년 4년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8.4%로서 인류 발전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었던 현상이다. 이런 성과 중에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빼고 싶어도 빼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2010년은 중·한 공식수교 20여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1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125.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9%증가하였고 수입은 233.9억 달러로 전년대비 0.8%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108.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증가하였고 수입은 285.7억 달러로 전년대비 22.2%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130.7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2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3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203억 달러로 전년대비 29.7%증가하였고 수입은 431.3억 달러로 전년대비 50.0%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230.3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99.6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4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278.2억 달러로 전년대비 38.4%증가하였고 수입은 622.5억 달러로 전년대비 44.3% 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344.3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14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5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351.2억 달러로 전년대비 26.3%증가하였고 수입은

7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3.7%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417.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445.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9%증가하였고 수입은 89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6.8%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452.6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34.8억 달러 증가하였다.¹⁷⁾

2007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561.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0%증가하였고 수입은 1040.4억 달러로 전년대비 15.8%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479.1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6.5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8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739.1억 달러로 전년대비 31.7%증가하였고 수입은 1121.5억 달러로 전년대비 7.8%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382.4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96.7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9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536.8억 달러로 전년대비 29.4%감소하였고 수입은 1025.5억 달러로 전년대비 8.5%감소하였고 무역적자는 488.7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0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0년 1월~10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557.5억 달러로 전년대비 3.96%증가하였고 수입은 1128.9억 달러로 전년대비 9.05%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571.4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82.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나.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 발전현황

2001년도에 양국의 무역규모가 314.9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1991년도 대비 약 7배, 1992년도 대비 약 5배로 급증하여 중·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외교관계 수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1년 중·한 양국간 교역은 세계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그간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하였는데 대 중국 수출이 181.9억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1.4%가 감소했으며, 대 중국 수출부진은 섬유류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입부진은 철강류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2002년 중·한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말에는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홍콩을 합친 대 중국 수출 규모가 12.2%인 미국을 앞서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제1위 수출시장임을 확인해 주었다. 2002년도 대 중국 수출은 23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증가하였고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8%증가 하였으며 무역

17) 김권형, 한·중 농산물 교역 확대 방안, 농수산물 무역정보, 2007, pp30-45.

흑자는 63.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모두 20.5억 달러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였다.

2003년 대 중국 수출은 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증가하였고 수입은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5.9%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32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68.5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4년 대 중국 수출은 497.6억 달러로 전년대비 41.7%증가하였고 수입은 2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5.0%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01.9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68.9억 달러 증가하였다.¹⁸⁾

2005년 대 중국 수출은 6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4.4%증가하였고 수입은 3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33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64.1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6년 대 중국 수출은 69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증가하였고 수입은 4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5.6%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09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4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7년 대 중국 수출은 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18.0%증가하였고 수입은 630억 달러로 전년대비 29.8%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90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9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8년 대 중국 수출은 9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증가하였고 수입은 7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2.1%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4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45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9년 대 중국 수출은 867억 달러로 전년대비 5.10%증가하였고 수입은 542억 달러로 전년대비 29.5%감소하였으며 무역흑자는 32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80억 달러 증가하였다.

2010년 1월~10월 대 중국 수출은 951억 달러로 전년대비 9.65%증가하였고 수입은 581억 달러로 전년대비 9.98%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370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45억 달러 증가하였다.

18) 이승신, 양평섭,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30-35.

2. 중·한 교역 발전 과정

1992년 8월 중·한 공식수교 이래 양국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양국간의 무역액은 50.3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은 1119.3억 달러에 이르렀다.¹⁹⁾ 2007년에는 1599억 달러로 수교 당시의 약 32배를 기록하였고 양국 무역은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2008년에는 1861.1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6.2%나 증가하였다.

수교 이후 중·한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단계(1992년~1997년)는 제 1확대기로 양국 무역이 간접 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전환되고 무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둘째 단계(1998년~2001년)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 무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셋째 단계(2002년~2005년)는 제 2의 발전기로서 양국간 투자와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상품구조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넷째 단계(2005년하반기~현재)는 중·한 무역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표 3-1> 중국의 대한국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한 무역액	50.3	359	440	632	900	1119	1343	1599	1861	1409
대한 수출	24.1	125	155	201	278	351	445	561	739	542
대한 수입	26.2	233	285	431	622	768	897	1038	1121	867

자료: 중국 세관 통계, 2010

19) “중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 무역액이 1 천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30 년이 걸렸으나 한중간 무역은 불과 13 년 만에 1 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http://www.gb.cri.cn/1321/2005/11/29/1327@800288_1.htm 를 참조)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 1위의 무역 상대국이자 제1위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양국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중 수교 15년 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약 34조원의 GDP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2006년 중 대중국 순 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46% 이었고 특히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던 2003~2005년 시기에 대중국 무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무역 총액은 2010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한 무역이 이렇게 신속히 발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중·한 양국은 세계에서 모두 경제적인 활력이 있는 국가이고 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중·한 양국간 자원, 노동력, 산업 구조, 상품 시장, 자본, 기술 및 기업 관리 등의 방면에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양국 기업은 양국 체제개혁과 시장개방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활발한 투자가 있었던 점이다. 투자는 양국 무역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 2 절 중·한 통상마찰 현황 과 원인

1. 중·한 통상마찰의 현황

양국간의 경제교류 확대 추세에 수반하여 통상마찰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중국 측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한 무역역조(貿易逆調)에 대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1993년부터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2년 무역흑자는 6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의 61.4%를 차지했다. 2003년에 들어서는 흑자규모가 더욱 커져 2008년 기준으로 이미 235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1992년부터 대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대한 무역 적자는 81억달러에 달하며, 1992~2002년 11년 동안의 대한 무역역조 누계는 690억 달러에 달하고, 2008년 대한 무역적자는 38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 입장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상당 부분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의 빠른 증대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대중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무역량의 확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중국 제품 특히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 통관상의 편의와 우대를 확대하고 관세·비관세장벽을 낮춘다면 중국의 대한 수출이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마늘 마찰은 이러한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조정된 통상마찰 사례였다. 양국간 통상마찰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 등 경합분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양국간 경제교류에서 상호보완 부문보다 경쟁부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 모두 고속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의 대한 반덤핑 제기가 증가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반덤핑 제기 건수는 2008년 10월까지 18개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과 6개 품목의 조사대상 품목이 있는데, 이중 한국과 관련된 것은 19개 품목(철강, 화유화학제품이 대부분)에 달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의 최다반덤핑 제소 대상국이다.

중·한간의 통상마찰 증대문제는 앞으로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구조는 한국이 중국으로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조립 또는 가공된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으로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현지조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의 빠른 향상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중국의 대한 반덤핑규제 품목(예:철강, 화학제품)이 수년 후에는 한국의 대중 반덤핑규제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인접국으로서 통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라는 장기 비전을 지향하여 가급적 상대방에 대한 개방과 우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인 장치로써 양국간의 무역원활화 내지 통관상의 우대 편의 확대, 무역장벽완화를 촉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한 통상마찰의 원인

중·한 통상마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의 취약성은 농업에 관한 국제협상은 늘 다른 분야의 협상 후로 미뤄 졌다. 또한, 식량안보라는 취지에서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즉, 생산성이 높은 일부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더 이상 농업에 대한 보호차원에 한계가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설 명할 수 있는 근거는 WTO체제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이 그것이다. 중·한 마늘 마찰은 이런 이유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비해 재 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현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지 측면에서 끝난 다면 과연 농업이 앞으로 발상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응할 수 없 다²⁰⁾.

둘째, 협상전략상의 부적절할 세이프가드 제도는 국내산업의 일시적인 보호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수입국과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한다. 현재 무역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밀려오는 시장개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이프가드제도와 무역위원회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로 국내산업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역위원회가 한국의 산업보호와 구조조정에 플러스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업 피해조사와 산업 피해 유무의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를 현재의 무역위원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역위원회가 지닌 독립성과 귀속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 문제는 현재 무역위원회의 소속이 산업원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역위원회는 대외적 으로는 일종의 국제 간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과연 현재의 무역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다음으로 귀속문제이다. 이 귀속 성은 위원장 1 명, 상임위원 1 명과 비상임위원 6 명으로 구성된위원회 자체의 문제이다. 또한, 이 비상임위원은 현재 겸직 중이다. 그리고 무역조사실의 인원이 49 명이라는 점이다.

20) 朴光姬, “中韩建交15年來双边貿易的发展及其存在的问题”, 当代亚太, 2007年 第7期, pp23-30.

이런 조직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 할 수 없다.

셋째, 이익집단의 개입이다. 중·한 마늘 마찰이 한국 농민을 자극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익집단의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세이프가드는 발동에 따른 보복조치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수입금지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개입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발동과 그 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넷째, WTO규정의 모호성이다. WTO체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제도는 개발도상국 내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성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서 피해의 정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동기간의 문제이다. 발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용이성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또한 이 발동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선진국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해준 또 하나의 요인이다.

다섯째, 중·한간 무역구조의 변화이다. 양국간 무역마찰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 등 경합분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즉 양국간 경제교류에서 상호 보완부문보다 경쟁부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 모두 고속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²¹⁾

양국의 교역상품구조면에서 상호보완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은 수출과 수입에서 동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본재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경우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광물자원, 농산물, 섬유제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는 저개발국이 아니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같이 고부가가치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1)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WTO 가입후의 중국의 발전과 리스크, 한국무역협회, 2007

<표 3-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변화

순위	2007/품목	2008/품목	2009/품목	2010.11/품목
1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제품
3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철강관
4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5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6	석유제품	합성수지	광학기기	컴퓨터
7	석유화학 합성원료	광학기기	컴퓨터	광학기기
8	광학기기	석유화학 합성원료	석유화학 합성원료	무선통신기기
9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철강관	석유화학 합성원료
10	석유화학 중간원료	철강관	석유화학 중간원료	석유화학합성원료

<표3-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 변화

순위	2007/품목	2008/품목	2009/품목	2010.11/품목
1	컴퓨터	컴퓨터	철강관	광학기기
2	의류	철강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3	석탄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4	반도체	의류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5	전자응용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오류	합성수지
6	철강관	무선통신기기	석탄	정밀화학원료
7	알루미늄	알루미늄	선재봉강	광학기기
8	정밀화학원료	선재봉강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합성원료
9	정전기기	석탄	정밀화학원료	철강관
10	합금철선철, 고철	정밀화학원료	알루미늄	반도체

※자료: KOTI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0

제 3 절 중·한 통상마찰의 사례분석

1. 중·한 농산물 통상마찰 사례

중·한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인접성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의 특성이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입증가는 중·한간의 농산물 통상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 발생한 중·한간 농산물 통상마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²⁾.

가. 마늘 사례

한국이 중국산 마늘의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자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시키는 등 전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마찰은 직접적인 수입금지 같은 반 자유무역주의적 조치에 바로 호소하는 것은 중국의 글로벌 차원의 무역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통상외교가 이러한 통상 무역마찰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마찰은 중국산 마늘의 대량수입으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비롯됐다. 농협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 피해조사를 신청했고,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사실을 받아들여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200일 동안에 무려 10배 이상 인상하는 잠정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준수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규정에 합치된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말하자면 형식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대한 무역역조 심화문제를 지적하며, 긴급관세부과 철회를 주장했다. 중·한 양국은 두 차례나 실무협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별도의 적절한 보상방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측은 거부하고 끝내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22) 송유철, 한·중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2007, pp31-34.

한국과 중국의 양국 대표가 마늘로 인해 발생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벌인 결과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에 한국은 그 해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 쿼터를 2만1백5톤으로 책정했다.

나. 김치 사례

김치가 중·한 통상마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제조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김치에 각종 이물질과 기생충 알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성급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김치 중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세계적으로 손상했다. 한국은 기생충 알이 어떠한 경위로 생산된 제품에서 나왔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 또 그 생산시설은 누구의 소유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전체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²³⁾

(1) 마찰의 경위 및 원인

중국산 김치의 한국 수출은 2005년 7만6천 톤에 이르고, 2006년에는 2,155만 달러가 수출돼 2008년 137% 증가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 일부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의 파문이 커지고 국내산은 괜찮으냐는 의문이 확대되자, 기생충 전문가 2명의 자문을 얻어 국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생충 알은 시간을 다룰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더구나 미성숙란만 검출되어 인체 감염무려가 전혀 없다며 마찰을 완화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유해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²⁴⁾

이에 앞서 2004년 중국산 수입김치가 국내산에 비해 납 함유량이 최대 5배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어서 식약청은 서둘러 과잉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산 김치만 해도 502개 품목이나

23) 임정빈, 한·중 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p46.

24) 유진석, 한·중 수교 10주년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20-31

되는데 중국산을 포함해 58개 제품의 납 함유량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한 김치마찰이 통상마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간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었으나, 양국의 무역 조건 및 관행이 크게 달라진 만큼 김치마찰이 더 격화되지는 않았다.

중국산 김치 재료로 쓰이는 배추와 무는 주로 산둥성(山東省)과 요녕성(遼寧省)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곳 수만 가구의 크고 작은 농가에서 배추와 무를 김치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내 한 농업 전문가에 의해 중국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인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분 사용이 김치에 기생충 알이 묻어 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인분으로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포기마다 인분을 조금씩 주는 방법, 인분을 밭에 뿌린뒤 흙을 뒤잡는 방법, 그리고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이중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 외에는 기생충 알이 배추와 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분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김치를 양산하는 영세한 중국내 김치공장은 100곳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산둥성(山東省) 및 요녕성(遼寧省)에 몰려 있다. 북경 인근에도 국내 유명 브랜드와 북한의 해당화 김치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수출되지 않는다. 한국시장을 겨냥한 김치는 산둥성(山東省)과 요녕성(遼寧省)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산둥성(山東省)의 경우 청도 및 연대(煙臺)에는 60여 곳이 넘는 김치공장이 성업 중이다. 이들 공장은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에 의해 운영된다. 불량김치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영세한 김치공장이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김치공장 중 일부가 이 부류에 속한다. 오히려 중국공장 중에는 위생시설이 완비된 초대형 공장이 많다. 일본자본이 투입된 대형 중국 김치공장도 8군대에 이른다. 이들 공장에서는 가공 야채와 김치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치 파동이 중국 내 한국 김치산업을 위축시키고 중국의 대형 김치공장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파동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위생기준을 적용, 한국인과 조선족에 의해 운영되는 영세 김치공장을 퇴출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불량김치 파동에 중국 검역당국이 보복조치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국내산 화장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김치공장이 하루에도 한 곳이 생기고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치 공장의 부침(浮沈)은 심하다고 한다. 한국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영세 김치공장일수록 이 같은 일이 허다하다. 한국 국내 수입업자의 김치 수입 가격 경쟁도 문제다. 북경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kg당 2400원 안팎이다. 그러나 산둥성(山東省)에서 국내 수출을 위해 가격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니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지하수를 이용, 큰 통에 담긴 배추를 발로 씻고 녹슨 기계로 김치를 담그는 중국 김치공장의 현주소는 수입업자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²⁵⁾

(2) 마찰의 처리 및 결과

김치 파동 이후, 중국은 김치 제조업체가 생산시설의 위생을 강화하지 않는 한 생산 허가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라기 보다는 실리적 이익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모자라 도산하게 될 한국 업체를 중국 기업이 인수, 중국 자본이 세계적인 먹을거리 김치산업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중국산 김치가 비위생적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 촉발된 양국의 통상마찰은 한국 김치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김치 마찰은 한국과 중국 정부간에 식품검역협의를 발족시켰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의 차관보급 이상이 대표를 맡는 고위급 식품검역협의체 발족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이다. 한국은 김치문제가 중·한관계 전반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중국도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은 김치문제가 통상마찰 등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만한 해법을 찾아서, 고위급협의를 발족시키기로 한 것이다.

식품검역협의체의 대표로 한국 쪽에서는 차관보와 중국은 질검총국(質檢總局)의 차관급이 임명되었다. 중국 측이 김치 마찰을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였고, 중·한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에서 국내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로까지 이어진 최근의 김치 마찰은 유해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당국의 경솔한 대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5) 농림부, WTO 무역 분쟁-농산물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08, pp33-37.

통상마찰에 따른 자국의 막대한 무역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과 중국 당국은 각각 김치 파동이 통상마찰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원했다. 특히 양국은 이미 농·수산물 검역 문제를 해결할 기구로 중·한 검사·검역에 관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한 무역규모 확대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 등이 통상마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늘 파동 당시처럼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치 마찰이 마늘파동처럼 악화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양념장 등의 식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보복적인 조치로 수입금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내 업체들은 김치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중·한 양국간에 김치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는 수준이었다.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개별 상품 마찰을 넘어 중·한 통상마찰으로 변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식품 안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통상 보복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²⁶⁾

다. 중한 농산물 교역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EU의 시장점유율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94년 6.4%에서 1997년에는 10.5%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192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9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되어 중국은 한국에 대해 38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으로 인해 최근에는 양국간 통상 마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특별 수입 규제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26) 김권형, 한·중 농산물 교역 확대 방안, 농수산물 무역정보, 2008, pp51-52.

중국은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무부, 재정부, 농업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가검동위원회 등 7개부서는 연합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을 발표하고 공동으로 중국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은 최근 중국농산물수출이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과정에서는 여전히 품질안전 발생, 가공수준 낙후, 브랜드 제품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에 힘써 4-5년 내 300억 달러에 도달하고, 2013년 농산물 수출이 400억 달러에 도달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은 7항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 전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농산물 수출발전목표를 기획하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수출상품 구조를 우량화하여 농산물 수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출 중점기업을 육성하여 수출 농산물의 업계조직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농산물 수출촉진의 정책체계를 완비하여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건립하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수출 신용보험제도를 완비하여 농산물 수출기업의 위험대비 능력을 증진하는 것 등이다.

2. 중·한 간 반덤핑 사례

가. 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현황 및 분석

중국이 2009년까지 발동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총 53건이며,²⁷⁾ 이 중 대한민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32건(재심 포함)으로 한국은 중국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이다.

27) 전영춘, “한·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33-36

<표 3-4>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대상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러시아
반덤핑 제소건수	32	28	23	13	12	10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2002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제소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서 중국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05년에는 제소 건수가 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²⁸⁾

최근에는 신규 반덤핑제소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규제 건에 대한 재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제소 건수는 2002년 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심건수는 2005년에는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는 4건으로 원심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신규 제소 건수는 2008년 1건에 불과하나 재심 건수는 3건으로 오히려 원심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섬유류가 3건, 철강과 전기전자가 각각 2건으로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는 주로 소재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3-6>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3이상을 차지하는데 거의 전품목이 반덤핑제소를 당했다. 철강의 경우 건수로는 1건이나 금액 기준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이므로 반덤핑규제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²⁹⁾

<표 3-5>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구분	화학	섬유류	철강	전기전자	기타	총계
한국	20	3	2	2	9	36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28)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29)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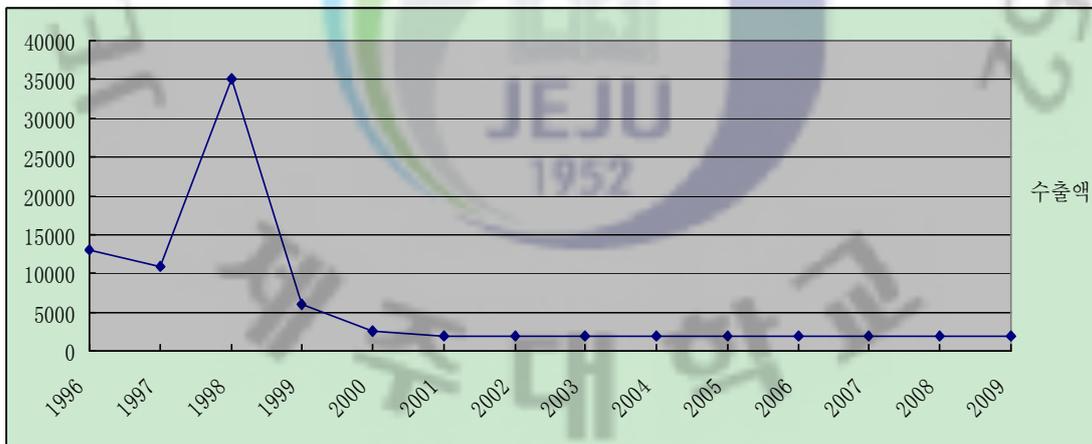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한 36건의 반덤핑제소 건수 중 현재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는 건수는 25건이며 9건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조사중지 되었다.

중국의 반덤핑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높은 반덤핑관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중국 측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1)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사례

이러한 반덤핑조치 품목은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2009년 6월)에서야 10년간의 반덤핑 조치가 풀린신문용지를 보자. 신문용지의 수출액은 1996년, 1997년 모두 1,000만 달러 내외였으며 1998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3,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1998년 6월에 17.11~55.95%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고 1999년 6월에 9~55%로 최종 판결되었다. 그 이후 반덤핑 기간이 만료된 2009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출액은 121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반덤핑이 얼마나 수입·수출량에 극심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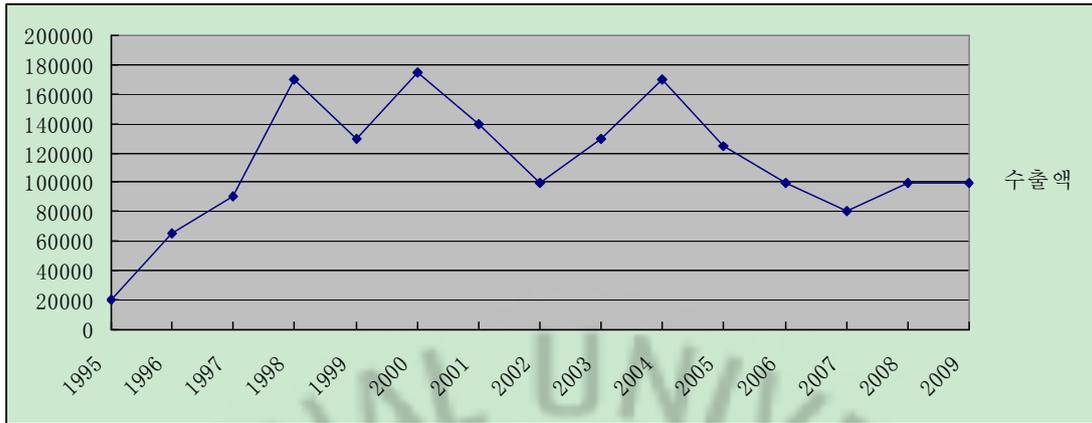
<그림 3-1> 한국산 신문용지 대 중국 수출추이(단위: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반덤핑조사. 2010

폴리염화비닐(PVC)의 대중국 수출은 1990년대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2002년 3월 반덤핑제소를 하였고 2003년 9월 6~7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조사 개시 이후 폴리염화비닐의 수출액은 2002년 9,668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림 3-2>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 대 중국 수출추이 (단위: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반덤핑조사. 2010

(2)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제소원인 분석

대중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중국의존도는 1998년 14%에서 2006년에는 130%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를 최대 통상현안으로 삼고 한 국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반덤핑규제를 통해 통상 압력을 가 하고 있다.³⁰⁾

양국간의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도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구조는 한국이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을 수입하는 수직분업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부품, 철강,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에서 수평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주로 석유화학제품과 집중되어 있다. 박순찬(2004)은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사 품목들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사가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이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출금액은 전체 대중국 총수출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 세계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44%와 32%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30) 金乐琴, “中韩两国互相直接投资: 挑战与对策”, 经济研究导刊, 2008年第11期, p34.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철강제품의 경우 전 세계적인 초과공급 상태로 중국시장에서 원가미만 판매 등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산업육성책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규제는 자국의 산업육성단계에서 과도기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수출에 의존했던 원자재와 부품이 국내산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 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세워야하며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대중국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3- 7> 중·한 반덤핑 품목 리스트

연 번	한 국			중 국		
	조사 개시	품명	조치(%)	조사 개시	품명	조치(%)
1	'97.4	푸르푸릴알콜	신청철회	'97.12	신문용지	9~55(종료)
2	'97.10	전기다리미	43.77(종료)	'99.4	폴리에스터필름	13~46
3	'97.11	페로실리코만간	17.95~24.68 (종료)	'99.6	스테인리스냉연 간판	4~57 (가격약속)
4	'99.11	알칼리망간 건전기	26.7(종료)	'00.12	이염화메탄	42~8
5	'02.1	백시멘트	미소마진	'01.2	폴리스테린	피해부정
6	'02.11	정보용지 및 백상지	2.22~7.72	'01.6	L-라이지	피해부정
7	'03.6	규산나트륨	신청기각	'01.8	폴리에스터칩	5~52(종료)
8	'03.7	차아황산소다	11.78~21.07	'01.8	폴리에스터단 섬유	2~33(종료)
9	'03.12	염화콜린	10.28~27.55	'01.10	아크릴레이트	2~20(종료)
10	'04.4	이산화티타늄	4.82~23.08	'02.2	신쇄용지	4~51
11	'05.4	도자기질타일	2.76~29.41	'02.3	무수프탈산	0~13
12	'05.9	폴리에스터장섬 유연신기공사	2.60~8.69	'02.3	합성고무	7~27
13	'06.2	폴리비닐알콜	11.1~35.17	'02.3	냉연간판	0~40(종료)
14	'07.4	플로트관유리	15.22~36.01	'02.3	PVC	6~76
15	'07.5	과산화벤즈일	0~9.72	'02.5	TDI	4.05~61.14
16	'07.9	초산에틸	5.81~36.01	'02.8	페놀	5~16
17	'07.10	PET 필름	5.67~25.32	'02.9	MDI	피해부정
18	'07.10	크라프트지	4.03~10.79	'03.5	클로로포름	96(가격약속)
19	'08.1	폴리에스터장섬 유부분연신사	2.97~6.26	'03.7	광섬유	7~46

연 번	한국			중국		
	조사 개시	품명	조치(%)	조사 개시	품명	조치(%)
20	'08.11	플로트관유리	11.2-15.3	'03.12	히드라진 수산화물	28-35
21	'09.6	폴리에스터장섬 유연신기공사	5.6-7.8	'04.4	골판지	11~65.2 (종료)
22	'10.8	PET 필름	조사중	'04.5	비스테놀 A	피해부정
23				'04.8	EPDM	피해부정
24				'04.11	핵산	25~119
25				'04.12	ECH	3.8~4.0
26				'05.4	플리우레탄 및 스펀텍스	0~60
27				'05.9	옥탄올	조사중지
28				'06.8	비스페놀 A(BPA)	5.8~37.1
29				'07.3	아세톤	5.0~51.6
30				'08.5	디메칠시이클로 실옥산	25.1
31				'09.11	아디프산	조사중지
32				'10.6	테레프탈산 (TPA)	조사중

자료: 지식경제부, 한·중 반덤핑 보도참고자료, 2010

나. 한국의 대 중국 반덤핑 현황 및 분석

한국은 1987년 2009년까지 총 192건의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46건(재심 포함)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덤핑제소 대상국이며 일본은 36건, EU는 23건을 기록하고 있다.³¹⁾

<표 3-7> 한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대상국	중국	일본	EU	미국	대만	기타국
반덤핑 제소건수	46	36	23	24	11	74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31) 서동혁, “우리나라 주요산업 대중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pp45-50.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부문에 대한 조사신청이 13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이 9건 등으로 화학, 기계, 전자 부문에 대한 한국 반덤핑조사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8>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구분	화학	기계 장자	광산물	생활 용품	섬유	제철 금속	기타	계
중국	13	9	10	4	3	1	8	48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총 48건의 대중국 반덤핑조사 건수 중 15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었고 11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반덤핑조치 품목은 화학, 기계, 전자가 대부분이며 이 품목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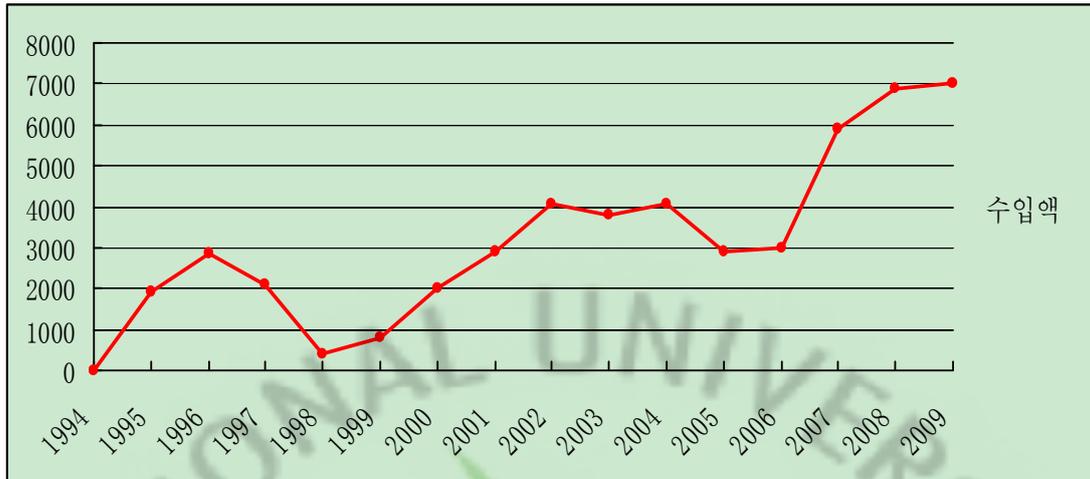
(1)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 사례

이러한 반덤핑조치 품목은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몇 가지 주요 품목의 반덤핑조치 이후 수입추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반덤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전기면도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94년 약 2만달러, 1995년 약 167만 달러, 1996년에는 약 27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였다. <그림3-3>에 대한 조치로 한국은 1996년7월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3월 최종 판정에서 향후 5년간 23.14-45.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수입액은 1997년과 1998년에 연이어 급감하였고 반덤핑조치가 유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덤핑 조치가 완료되는 2001년부터는 가격약속 5년이 추가적으로 확정됨으로서 대중국 전기면도기의 수입은 기존의 수입액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 이후 수입액은 가격약속 기간이 만료되었던 2006년(316만 달러)을 기점으로 하여 2007년 577만 달러, 2009년 778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³²⁾

32) 최근 한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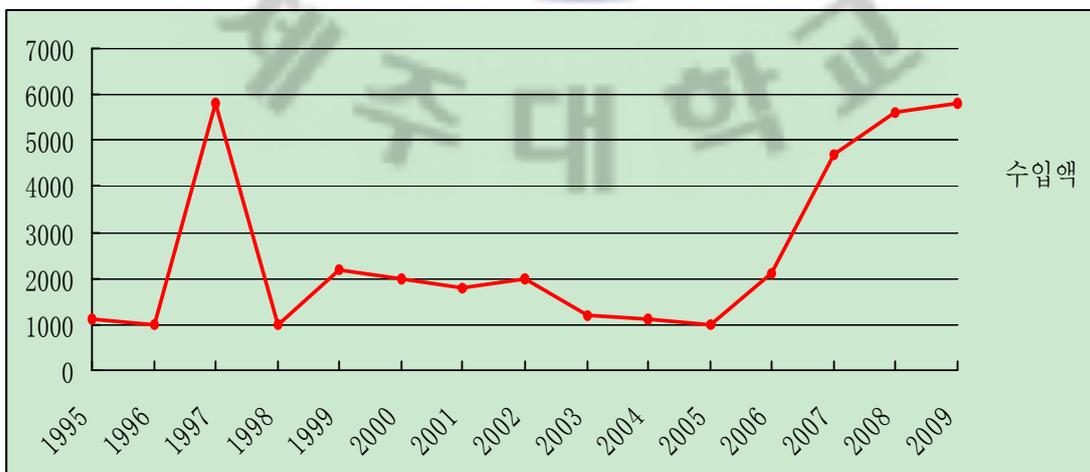
<그림 3-3> 중국산 전기면도기 수입추이(단위: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반덤핑조사. 2010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7년 56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로 1997년 2월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1997년 9월에 향후 5년간 32.84%의 반덤핑관세가 확정되었다. 조치 이후 수입액은 5년간 200만 달러 내외로 유지되었고 반덤핑 만료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듬해인 2003년 4월에 3년간 반덤핑이 추가 확정되었다. 3년이 지난 2006년부터는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여 2006년 221만 달러, 2008년 550만 달러, 2009년 6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3-4>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수입추이(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반덤핑조사. 2010

(2)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의 원인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중·한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많을수록 반덤핑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20%가 넘는다. 수출액이 증가하면 한국산업과 경쟁품목이 많아지며, 수출상품의 수량이 많아지면 반덤핑피소 건수도 많아지게 된다.

중국수출 기업의 저가수출이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제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많은 중국수출기업들이 국외시장을 독점하거나, 박리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가 경쟁을 함으로써 국외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경쟁업체제품보다 더 싼 덤핑행위를 하게 된다. 저가 수출로 인해 수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수입국의 산업전반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덤핑제소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일부 수출기업들은 국외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실제 시장가격 이하로 수출하고 있다.³³⁾

중국 자원가격 또한 저가 시장은 형성한다. 이는 중국자원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로 결정한다. 이 가격이 자원개발 원가만 포괄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 부담금의 반영을 배제한 원가와 더불어 정부의 부과 세금도 상대적으로 낮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자원의 가치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의 자원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제조 원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대우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13 억 인구의 노동력 공급과잉으로 인해 노동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의 원가가줄어 들게 된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3D (dangerous, dirty, difficulty) 산업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³⁴⁾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관세 환급으로 외향 경영체를 지향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고 토지를 지원하고 은행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관세 환급으로 회사를 유지하기로 한다.

33) 최정은, 중국의 대한 반덤핑 반덤핑조치 운용 연구 1997년-2007년 반덤핑 사례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23-35.

34) 김부찬, 中華經濟圈의 形成과 韓中通商關係에 대한 研究, 2007, pp286-287.

3. 지적재산권 마찰

문화적 충돌과 지적재산권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시장은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장애요인은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없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다.³⁵⁾

한국과 중국은 서로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면서도 오랫동안 민족적, 역사적 자립에 의한 정체성(Identity)이 완전히 차별화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으로 사회제도, 법규 수준, 언어,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법규와 사회적 관행 등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운용상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과 낮은 발전 단계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오히려 권리로 인식된다거나, 외국인에 의한 부당한 과당이익의 착취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특히 중국의 불법 복제는 이들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06년 9월 LG전자와 중국 우루무치(烏魯木齊)시는 공안당국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 LG 상표를 부착한 에어컨과 컬러TV생산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가짜 LG 상표를 부착한 에어컨 400여 대와 컬러 TV 430여, 총 138만위안(약 1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제품으로 1.5t 트럭 27대 분의 사상 최대 규모이다. LG 전자가 적발한 상표권 도용건수는 2003년 6건, 2004년 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6건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 3국으로 버젓이 수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우루무치 지역은 중앙아시아로 가는 교통 요지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³⁷⁾

35) 전영춘, “한·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34-40.

36) 이재기, 현대한국무역론, 청목출판사, 2008, pp56-60.

37) 孙霖, “关于中国贸易保护政策的政治限制研究”, 云南财经大学出版社, 2008, p24.

<표 3-9> 중국의 한국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표사례

분야	피해업체	주요 내용
전자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폰 도용생산
	LG 전자	에어콘 모함 도용생산
	대우일렉트릭	DVD 플레이어 상표도용 및 불법수출
산업기기	LS 산전	차단기, 개폐기 등 전력기기 모조품 생산
철 강	현대제철	H형강의 검사증명서 위조 도용생산

4. 자동차 통상마찰 사례

(1) 사건발생원인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그 성장속도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중국이 “시장과 기술을 바꾼다” 는 전략을 통하여 유명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유치하여 GM 과 폭스바겐 등 유명한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여<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제 1 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표3-10> 2009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 (단위: 만량, %)

순위	국가	2009년 국가 생산량 (만량)	2006년 국가생산량 세계생산량	2007년 국가생산량 세계생산량	2008년 국가생산량 세계생산량	2009년 국가생산량 세계생산량
1	미국	571	16.3%	14.7%	14.56%	12.98%
2	일본	793	16.5%	15.6%	15.70%	17.10%
3	독일	520	8.54%	8.45%	8.45%	10.90%
4	중국	1379	10.3%	12.1%	12.6%	29.9%
5	프랑스	204	6.2%	4.8%	4.23%	4.30%
6	한국	351	5.32%	5.4%	5.57%	5.37%
	전세계	3818				

자료: 중국신화연구소, 중국 자동차 분야 연구보고서, 2010

이러한 배경에서 GM대우 역시 자사의 경차“마티즈(현재 판매명 Chevy Spark)”를 생산해 왔는데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치루이(영문명 “체리”)가 이를 모방해 “QQ”라는 이름으로 소형차를 생산, 판매하자 QQ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과 공개 사과, 경제손실 약 97억 원을 배상하고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을 보면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다. GM대우는 2003년6월 처음 마티즈 중국 조립생산을 시작한 후에 1만2천대 정도를 판매하였다. 치루이의 QQ는 마티즈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되어 6~7만대 정도가 팔려 나갔다. 게다가 체리사가 QQ를 동남아 등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GM대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GM대우는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표 3-11> QQ 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만량,)

Chery Sales	2003 vs. 2004		2008 vs. 2009	
	Sales 2003	Sales 2004	Sales 2008	Sales 2009
QQ	25,186	49,066	35,600	41,900
Fengyun	45,930	23,149	38,650	27,399
Qiyun	6,926	5,550	8,590	7,493
Son of the East	7,307	8,802	9,523	10,933
Spark	12,000	24,487	3,6008	4,7000

자료 : 中國工業汽車協會, 소형 자동차 매출 통계, 2010

(2) 결과

GM대우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특허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동시에 치루이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을 포함해서 24가지 특허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4년 9월, 中國商務部 副部长과 中國知識產權局 副局长은 “중국 법률제도와 GM이 제공하는 증거를 검토할 때, 현재까지 치루이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없다”고 발표하고 불공정경쟁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chevy 사”의 정식적인 영문 상표명은 “chevrolet”로 영문 명칭 역시

도용한 것이 아니라고 전격적인 중국기업의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도요타 역시 2003년吉利(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도요타나 GM 대우가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전문 인력과 현지적응 능력이 비교적 강한 글로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국시장을 과소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노력이 결여되어 심각한 국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 지 훼손과 같은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5. 신용장 및 서류하자관련 마찰

국제관례상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의 거래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은 외국측이 중국측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국측 개설은행의 대금 지불 거절은 화물을 받은 수입상이 수량, 품질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과 협조통지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장 독립성원칙의 예외와는 성격이 다르며 지급정지 명령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이는 중국지방법원의 지방보호주의와 큰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L/G상의 문구상 불일치를 하자로 대금지급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주로 시황 변경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악용하게 된다.³⁸⁾

선적일자 및 서류수정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서류 수정 없이 진행하는 과정 중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출자의 업무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위반한 백데이터등의 위조사례 및 수입자에게 B/L 제공에 따른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요인으로 신용장 자체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신용장 자체의 한계성에는 첫째, 신용장 통일규칙의 결함에 따른 요인 둘째, 신용장 관련 조항 불완전성에 기인한 요인 셋째, 서류심사의 해태에 기인한 요인이 있다.

38) 이문형, “중국 대한민국 수출 분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9, p45.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환어음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스펠링 체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서 인수거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부 신용장여부 또는 해석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로 B/L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앞으로 송부하는 경우 수입자가 동 B/L을 가지고 화물을 인출한 후 클레임(Claim)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수입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B/L을 수입자에게 직접 선(先)송부해주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³⁹⁾

한편,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불일치를 통보받으면 신용장 서류 제시기한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자와의 협상에 임해보되 최종적으로 서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도착 후 3개월 이내에 제3의 수입자를 물색하여 전매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의 최종적인 대금지급책임은 사실상 수입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거래이전에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6. 대금회수 관련 마찰

바이어가 제품수령후 상품하자를 이유로 시황변화에 따른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는 수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쌍방의 타협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적 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의 마찰조항에 중재를 통한 합의를 명기했다면 중재를 통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승소의 의미는 별로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39)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2010년, p210.

첫째, 상호간에 마찰조항을 통한 중재합의가 없고, 둘째, 상대방이 금전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용의가 없으며 셋째, 상대방이 지불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등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시효가 늦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 선임 시 관련분야에 대한 법률지식, 로비 및 활동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지방인 경우, 지방권력기관 개입으로 부당 압력 소지가 있는 경우는 중앙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는 지방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인단체 또는 한국정부기관에 협조요청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7. 기타 통상마찰 사례

가. 중·한 수산물 위생검역 사례

최근 WTO농산물 마찰 발생요인 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동식물 검역 및 검사제도에 대한 것이다. 중국산 반입 농산물에 다량의 농약검출로 인해 수입을 규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통 및 운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나 유해수산물 발생 등의 원인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가 있다.

2005년 7월 한국은 중국산 장어와 장어가공품(양념장어)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양식장에서 세균·곰팡이·기생충 방지약으로 사용되었으나, 1900년대 이후 발암가능성 때문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2005년 7월 28일 실시된 식약청의 중국산 장어에 대한 1차 유해성분 검사에서도 생장(50612는 8건 중1건 5.6t)양념 장어는 7건(69.5t)에서 유독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 2005년 7월 검사에서는 중국산 장어와 가공품 일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돼 통관 금지·반송·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이 2005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수입된 중국산 살아있는 장어 25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건(10t)에서 이 독소가 또한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월 달 발암물질이 검출돼 압류된 중국 10여개 회사 제품의 양념·초밥용장어 291t을 조사한 결과, 38건에서 이 독소성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될 때에는 즉각 수입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중·한 위생약정의 보완이 추진된다. 또 필요시 중국현지 실태 조사도 벌이는 한편, 2005년 하반기부터 중국 양식장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나. 가금류 마찰

중국이 조류독감 파동 이후, 한국 정부에 냉동 가금육(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무역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2006년 2월 제2차 중·한 검역검사협의체에서 중국정부가 냉동 가금육 수입 허용을 공식 의제로 제기하였다. 세계 2위 가금육 생산국가인 중국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수입 허용을 요청해왔고, 중·한 검역검사 협의체의 의제로 정해진 만큼 검토와 협의를 해야 했다.

한국의 농림부는 중국산 닭고기 문제가 과거의 마늘파동이나 김치마찰과 같은 무역 보복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중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중국산 닭고기는 중국내 AI발생으로 열처리 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중국도 한국에서 AI발생하자 2005년 11월부터 한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중국에서는 2005년 10월에도 인천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인체 감염으로 14명이 숨졌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AI도 유전자 분석결과 철새에 의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국토면적이 넓은 만큼 가금육 수입 금지를 나라 전체가 아닌 AI가 발생한 성(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제관행에 따라 AI 발생 이후 90일이 지난 뒤 추가발생 사실이 없으면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추가발생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납득할 만한 AI 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제 4 절 중·한 통상마찰 사례의 시사점

1.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추이

중국 수입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은 중국 소비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새로운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제품개발과 수출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조건들을 대부분 이행해야 하는 5년의 과도기가 끝남에 따라 중국정부는 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부가가치 수출 전환 노력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와 부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만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국 로컬기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돼야 할 것이다. 단순한 상품수출과 판매보다 제품관련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수출선 다변화 등 포괄적 수출전략의 수립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대체 확대와 국산화율 제고에 대비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입대체가 아직까지 저급기술 제품에 머물러 있어 고급기술 제품의 경우 외국계 대기업들이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3국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대 중국 수출증가율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포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한다.

제 4 장 중·한 통상마찰에 대한 문제점

이제까지 중한 무역이 크게 발전하여 왔지만 제3장에서 열거한 사례를 같이 양국 통상마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심해지는 추세이다. 본 장에서는 중·한 통상 마찰의 현안 문제를 다음 4가지로 정리했다.

제 1 절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문제

1. 무역적자 현황

중·한 무역의 빠른 성장과 동시에 양국 무역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표4-1> 1992-2009년 중·한 무역 통계 (단위: 억 달러)

년도	무역액	대한수출	대한수입	무역수지
1992	50.3	24.1	26.2	-2.0
1993	82.2	28.6	53.6	-25.0
1994	117.2	44.0	73.2	-29.2
1995	169.8	66.9	102.9	-36.0
1996	199.9	75.1	124.8	-49.7
1997	240.5	91.2	149.8	-58.1
1998	212.6	62.7	150.0	-87.2
1999	250.4	78.1	172.3	-94.2
2000	345.0	112.9	232.1	-119.2
2001	314.9	181.9	133.0	-48.9
2002	440.0	155.0	285.0	-130.0
2003	632.3	201.0	431.3	-230.3
2004	900.7	278.2	622.5	-344.3
2005	1119.3	351.1	768.2	-417.1
2006	1343.1	445.3	897.8	-452.5
2007	1599.0	561.4	1037.6	-476.2
2008	1861.1	739.5	1121.6	-382.1
2009	1409.5	542.5	867.0	-325
합계	11332.5	3982.5	7340.0	-3368

자료: 한중무역협회 통계자료(www.kotis.net), 2010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적자는 1992년 공식수교 당시의 2.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적자액은 다년간 같은 해 대한 수출액을 초과했다. 2004년에는 344.3억 달러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6년 연말에는 적자누계가 2185억 달러에 달했고 동시 대한민국 수출누계를 초과하였다. 2009년 연말 적자누계는 3368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 1무역 흑자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적자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양국 무역 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⁴⁰⁾

2. 무역적자 요인

대한국 무역적자가 생긴 원인은 다방면이므로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양국 수출입상품구조의 차이

양국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며, 각국이 보유한 천연자원에도 차이가 있다. 중·한 전통적 무역은 거시적으로 보면 비교우위 이론에 부합하다. 즉 중국은 한국에 저급기술 보유량,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공업제품, 원재료, 농산품, 방직의류 등을 수출하는 반면에 한국에서 화공제품, 가전제품 등 고기술부가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상품은 주로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상품인 반면 수입은 저부가가치의 자원·노동집약적 상품을 위주로 한다. 중·한 수출입상품구조의 차이는 대한민국 무역적자가 생긴 심각한 역사적 배경으로 보인다. 중·한 무역에 있어서 적자 상품은 기술·자본집약적 상품을 위주로 한다.⁴¹⁾ 비록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수출입상품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나타나고 적자액은 양국의 무역증가와 비례 관계를 가진다.

40) 쌍한리, 취창연, “중·한 무역 문제 심층분석”, 2008, pp10-17.

41) “한국무역협회중에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상위 5 대품목이 석유화학 제품,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기초산업기계, 광물성 연료이고 무역적자.” 임영모, p6.

나. 중·한 양국 직접투자의 차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92년 중·한 공식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생산기지 및 가공무역의 중국 이전으로 인한 세 가지 상황이 발생됐다. 첫째, 중국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중국에서 조립가공한 후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나 한국에 역수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03년 1,180개 대중국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한국 원재료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40%이지만 생산된 상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비율은 경우 16%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 한국기업이 무역장벽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고 대중국 수출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생산지의 전환으로 인한 한국과 미국 간의 흑자는 중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⁴²⁾

비교해 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 가져오는 수출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한국 무역적자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다. 중·한 상품수요구조의 차이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2005년 GDP 연평균증가율이 9.9%였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자본·기술집약적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60년대 중반에 한국은 이미 “수출위주”, “무역입국” 등 국책을 세웠고 수출지향형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해왔다. 20세기 70년대 이래 한국산업 구조조정의 심화를 반영하여 자본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전자제품, 자동차, 화공, 철강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중국 수입상품의 수요구조와 부합하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주로 자원·노동집약적 제품이다. 이런 상품은 실재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본·기술집약적 제품보다 충격을 받기 쉽고 일단 상대 가격이 제고되면 대체되기도 쉽다. 따라서 상품수요의 차이는 중·한 무역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요인이다.

42) 李华, 郭义等, “本期主题: 关注中韩贸易不平衡”, 经济论坛, 2008.6, pp20-30.

라. 한국정부가 경제무역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태

한국정부가 무역 발전과정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국의 상품이 중국에 수출을 촉진하여 대중국 수출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중·한 경제무역 협력을 부단히 강화했다. 1992년 이래 양국은 여러번 정권 교체를 겪어 왔으나 각각 정부는 대중국 무역을 중시한다. 둘째, 비공식적 왕래를 통하여 경제무역 발전을 촉진시킨다. 셋째,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⁴³⁾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는 관세·비관세 장벽, 차별 대우를 취함으로써 중국 상품의 정상적인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1. 수출증가율 둔화추세 현황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3-2004년 40%를 넘어섰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5년 24.4%로 둔화된데 이어 2006년 12.2%, 2008년 11.5%밖에 되지 않았다.

<표 4-2> 한국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무역액 (증가율)	570.2 (38.6)	793.5 (39.2)	1005.7 (26.7)	1180.2 (17.3)	1450.2 (22.8)	1683.2 (16)	1409.9 (-16.5)
대중국 수출 (증가율)	351.1 (47.8)	497.6 (41.7)	619.2 (24.4)	694.6 (12.2)	819.8 (18.0)	913.9 (11.5)	867.5 (-5.1)
대중국 수입 (증가율)	219.1 (25.9)	295.9 (35.0)	386.5 (30.6)	485.6 (25.6)	630.3 (29.8)	769.3 (22.1)	524.4 (-29.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43) 马常娥, “中韩贸易逆差”, 黑龙江大学出版社, 2008.5, pp33-45.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하락세가 보였으나 2006년부터 하락 폭이 수출증가율의 하락보다 낮아 2006이후 3년 간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중국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대중국 수출을 살펴보면, 수출 품목간의 양국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 투자의 내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과정에 원재료나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경기는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산업 생산의 기초 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품목 중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⁴⁴⁾

2.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

가. 중국의 시장 환경변화

중국정부가 지나친 고속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을)지양하고 있고 기술이전 효과가 높은 제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순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수입 시장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 효과도 둔화되고 있고 향후 중국 수입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입시장은 200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⁴⁵⁾

수출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소비주도형으로 전화하기 위하여 2006년 상반기 이후 중국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수출억제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감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소 차원에서 2007년부터 위안화의 대미 절상속

44)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국민총생산이나 국민 소득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로 나타낸다.”(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

45) 현대경제연구원, “대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과 전망”, 2008.11.

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조치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이 수출 및 가공무역 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에 대중국 수출 중 54.3% (2007년기준)를 차지한 한국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11월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11.8%나 감소하였다.⁴⁶⁾

나. 기업 경쟁 환경변화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는 중국내 재고증가, 관련산업의 생산증가율 감소, 중국 현지기업의 생산능력 확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생산력 확대로 현지 원부자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도 커졌다. 코트라가중국에 진출한 431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2005년 44.8%에서 2006년 37.8%로 떨어졌고 2005년 중국(52.7%), 한국(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다.⁴⁷⁾ 이것은 대중국 투자기업이 중국 진출 초기,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하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조달을 현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부품조달 현지화 비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또한 그간 핵심 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국산 화율의 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의 많은 부품회사가 납품업체를 따라 중국에 동반 진출하고 있어 한국 부품의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 된다.

다. 글로벌 경기악화

국제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국 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내 소비 및 생업생산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 둔화가 가속화됐다.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77.8%가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비중도 높아 중국 수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출 대상도 주도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이다.

46) 이문형, “중국 대한국 수출 분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9, pp5-6.

47)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

이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중국에서 조립가공한 후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수출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한국산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이 줄고 있다.

제 3 절 중·한 무역장벽 문제의 심화

중·한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결합이 심화되고 있고 본장 제 1 절에 설명했던것과 같이 양국 무역불균형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또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쳐 중국경제 변화에 지나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한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시장과 에너지 외교영역에서 양국의 경쟁 관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은 양국간 무역장벽을 심화시키고 있다.⁴⁸⁾

1.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첫째, 한국의 관세장벽이 높다. 2006년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8%이하였으나, 일부 농산물 및 공업품의 실제관세는 기타 공업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이 농수축산물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관세장벽은 주로 조정관세, 쿼터관세 및 특수보장보치관세가 있다.

농림수산물 등에 대하여 기조관세에서 100%를 초과하지 않는 조정관세를 부가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이 수입조정관세를 징수하였던 17가지 상품 중 중국과 관련한 상품은 10가지를 넘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바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이 63가지 상품에 대해 아직도 쿼터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상품에 대하여 한국은 200%이상의 쿼터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녹두, 팥, 메밀, 콩, 땅콩, 인삼 등 44가지 농림상품의 수입량이 일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최고 1067%에 달하는 농

48)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14016001> 를 참조)

산품 특수보장조치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2006년 한국은 메밀, 밀, 땅콩 등 19 가지 농산물의 수입기준수량을 낮추었고 이것은 한국정부가 더 낮은 수입량 하에 농산물특수보장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녹두, 팥 및 콩이 이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2006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20%~50%나 감소하였다.

둘째,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관세장벽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빈번하게 실시한다. 통관단계장벽, 기술적 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과 검역조치(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등이 있다. 한국이 수입농산품에 대한 통관전 세액심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산품의 통관시간을 연장시키고 생사비용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기술적 무역장벽을 취함으로써 수출한 상품의 대한국 수출이 장애를 받는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국 상품으로는 주로 농수축산물,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의약 및 의 약 원료 등이다. 그 중 특히 생과일 및 돼지고기, 쇠고기 등 동물성 생산품과 의약 등은 한국에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 한국정부는 위의 상품에 대한 규제조치로 검사·검역 및 안전 표준을 적용한다. 또한 수입 검사·검역을 할 경우 중국 상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6%의 표본 검사를 사용하나 미국은 3%밖에 하지 않는다.

나.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첫째, 중국의 관세장벽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국은 복합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수입관세는 크게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의 4가지 중의 하나를 적용한다. 중국은 WTO가입후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평균관세율은 2001년 1월 15.3% 였으나 2004년 1월까지 10.4%로, 2007년 9.8%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농산물에서 15.2%, 방직은 10.4%로 아직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⁴⁹⁾ 자동차의 경우 2001년 WTO가입 이전 관세 100%에서 첫째에 43.8%로 낮추었고, 2006년 7월 1일부터 25%로 인하하였다. 한편 2003년 4월 중국의 정보기술협정(ITA)참가가 승인됨으로써 IT 기술제품은 2005년 관세철폐를 하게 되었다.

49) 张颖, “对于中韩贸易关系的特征和对策研究.” 商业现代化杂志, 2008, p3.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WTO가입 후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왔으나, 아직도 중국이 농업, 서비스부 문과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WTO가입 후 대대적인 무역 및 투자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도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중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양국간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이 되었다.

2. 양국간의 덤핑·반덤핑 확대 문제

국제무역에서 문제가 되는 덤핑이란 주로 수출을 하는 나라가 국내 수요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을 하게 되는 동기로는 과잉상품의 처분, 조업도의 유지, 국내 가격의 유지, 특정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자기 시장에 대한 제 3 자의 경쟁 배제, 다른 시장의 탈취,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는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여러 차례 담판을 거쳐 각국의 관세수준을 대폭 낮췄고 비관세장벽의 사용에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덤핑은 각국정부가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수단이 된다. 상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1979년 첫 반덤핑 사건부터 2004년 6월말까지 국외의 대중국 반덤핑사건은 476건에 달하였다. 중국은 이미 받은 반덤핑사건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이것은 중국의 대외수출 확대에 큰 위협이 된다.⁵⁰⁾

50) 李光辉, “通过合作来促进中韩经济贸易的发展”, 对外经贸大学出版社, 2007, p3.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건은 모두 23건이었고 중국의 대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건도 22건이었다. 한국이 이미 중국의 최대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 되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사건은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박판과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대, 동판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무역동반자로서의 양국간에 반덤핑조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중·한 상호 투자현안과 과제

중·한 상호간 투자는 수교 이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통계를 간략히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금액면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수에서는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¹⁾

1. 중국 외자유치 전략의 변화

현재 중국의 외자유치 전략 방향은 중국 경제의 “쌍결구 모형(雙缺口模型)”⁵²⁾ 즉 “이중 결함 모델”을 보완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기술 향상 및 시장경제체제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유치하고자 하는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규모 속도형’에서 ‘품질 효율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2008년부터 실시한 “양세 일체(兩稅一體)”⁵³⁾ 개혁은 “산업특혜를 주된 것으로 여기고 지역특혜를 부차적인 것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의 외자

51) “도표로 보는 대중국투자 현황”(http://cafe.naver.com/tjlc1004/5912를 참조)

52) 쌍결구 모형(雙缺口模型): 196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H.B.Chenery가 주장한 경제모델이다. 쌍결구 모형은 투자가 저축보다 많고,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제구조를 지칭한다. H.B.Chenery는 중국이 발전하려면 국민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투자와 저축 그리고 수입과수출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53) 將兩部法律法規統一成一部所得稅法, 在稅率等方面對內外企業一視同仁. “百度”

이용전략이 질을 더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에 새로 수정했던 《외국 기업 투자지도 목록》은 고신기술 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과 환경보호 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격려하고 동시에 고 오염, 고 에너지 사업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임금 등 비용상승과 인민폐 평가절상

중국은 경제발전전략의 전환과 ‘화해사회 (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를 말함)⁵⁴⁾ 구축진전에 따라서 낮은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부터 실행하기 시작한 노동계약법은 초과 작업과 보험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되었고 임금이 더 상승할 추세가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토지 등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보호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고 자원과 환경비용의 상승도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변화가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진출 대기업보다는 중국 저가 노동력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중소기업 위주의 대중국 투자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동남아, 인도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였거나 불법적인 철수가 증가하고 있다.⁵⁵⁾

이 외에도 2005년 환율제도가 실행된 이래 인민폐의 대달러 가치가 이미 15%이상 상승했다. 중국 환율형성시스템의 진일보한 개혁에 따라서 인민폐의 대미 절상 속도는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에 있어서 양호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 코스트를 높이고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

54) “‘和諧社會’는 도·농간, 지역간 발전의 조화, 사람과 환경의 조화 등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는 것이다.” 정상은, 김경원, 상계논문, 2008, p13.

55) 金乐琴, “中韩两国互相直接投資: 挑战与对策”, 经济研究导刊, 2008年第11期, p34.

3. 산업공동화 및 기술유출의 문제

1990년대 후반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국내 생산기반이 와해된다는 시각으로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양국이 기술수준과 임금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한 편으로는 대중국 투자가 자국의 고용 및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한 상호간 투자,⁵⁶⁾ 특히 M&A 방식으로의 투자로 인한 기술유출이 기술 우위에 있는 한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M&A형태의 직접투자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기업들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자원 확보, 기술·노하우·브랜드 확보, 유통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M&A형 투자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기준으로 도소매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금액기준으로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판매 목적의 소규모 도소매업을 제외한 분야의 투자목적은 한국의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격차 해소에 있기 때문에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M&A형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산업기술보호 관련 교육 및 산업보안 기술의 개발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기업의 관리시스템 확립과 기술보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발을 단순히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이나 컨설팅,

56) “산업공동화는 경쟁력 약화로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생산도 증가하여 국내생산과 고용이 저하되는 현상.” 정상은, 김경원, 상계논문, pp5-6.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체계를 개발·운영하는 등 기술유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촉진 정책

중국은 1979년부터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해외자본, 기술,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에 의한 세계로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여년간 대외개방 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내 체제개혁을 위주로 하는 개혁정책과 대외개방형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대외개방정책은 引進來, 走出去, 參與協力 세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대규모 해외자본의 유입 즉, 해외진출형태의 '引進來'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의 수출도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대외개방 초기 해외직접투자 형태의 '走出去'는 자본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92년 대외개방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고 1994년 시장경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한 이후부터 비록 소규모이지만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비해 중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열악하여 '중국은 들어갈 뿐 나올 줄 모르는 국가'라는 질책이 있었지만 중국의 학자들은 Dunning의 투자발전단계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1인당 GNP 수준에 따라 경제발전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해외직접투자도 발전한다는 이론으로서, 1단계(1인당 GNP 400\$ 미만)는 해외직접투자가(outward FDI)가 전혀 없는 단계, 2단계(1인당 GNP 400~1,500\$)는 아직 무시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단계, 3단계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기업특유의 비교우위를 개발·확보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단계. 4단계에서는 기업들이 강력한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여 국내보다는 외국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J.H. Dunning(1981)을 인용하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이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1999년 해외직접투자를 부분적으로 장려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러시를 나타내는 '走出去'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2002년 1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해외투자를 ‘대외개방의 중요요소’로 평가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 유명브랜드 구축을 장려한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해외진출형태의 ‘引進來’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이 세계경제 대국 2009년 GDP규모 세계 2위(4.92조\$), 교역규모 세계 3위(2.2조\$),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44471억 달러), 외국인투자유치 2위(915억 달러, 2003년에는 535억 달러로 세계 1위)으로 부상하였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외부자본에 의한 성장의 한계, 세계적인 통상압력, 국내경기 연착륙의 문제,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경쟁과 자원낭비, 첨단기술 등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또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의 ‘走出去’가 급부상하고 있다.⁵⁷⁾

57) 中国商务部, 中韩经贸关系发展现存问题及对策建议, 中国商务部国际经济贸易合作, 研究院课题组, 2009, pp63-71.

제 5 장 중·한 통상마찰의 해소방안

제 1 절 중·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방안

1. 중국의 해소방안

가. 양측의 협의 강화를 통한 무역 마찰의 적절한 해결

양국정부기구는 무역에 관련된 법률법규와 절차를 실행하는데 충분한 교류를 가져야 하며 관련한 전자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여 쉽게 정보를 함께 누릴 수 있고 문의할 수 있다.

양국의 무역체제를 조화롭게 건립강화해야 하고 돌발사건이 정상적인 양자무역관계의 불리한 영향을 줄이고 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줄인다. 동시에 나타난 마찰과 분쟁에 대하여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반덤핑과 보장조치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차별대우한 행위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 측과의 양국무역관계의 전반적인 정세에서 착안하여 한층더 조정관세품목을 줄이고 중국 상품의 기술적인 장벽제한을 줄이며 적극적으로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유리한 대책을 취하며 중국 상품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기술적인 무역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은 제품은 주요 농산품, 수산물, 축산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등이 있다. 중국정부는 우선 이러한 수출상품에서부터 착수하여 한국정부와 그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하여야 한다.⁵⁸⁾

나. 대 한국 무역 수지의 적자문제 해결

현재 중·한 무역상의 거액의 무역수지의 적자문제에서 원대한 발전에 착안하여야 하고 양자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양자무역의 불균형한 형세를 바꿀 수 있게 협상하여야 한다.

58) 임영모, 중·한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50-60.

첫째, 한국회사가 중국에서의 구매율을 높여야 한다.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이 해외 구매에 의지하는 상황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 상품이 규격과 품질상에서 안정적이지 못해 수입상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방식에서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정책의 혜택이 많아 중국수출상품이 세금 수입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제품의 국산화비율을 높여야 하며 한편으로 과학 기술을 제일생산력으로 하여 중국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당한 정책을 제정하여 한국기업의 국내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국제품의 수출환경을 개선한다. 중·한 무역 수지의 적자를 형성한 원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이 중국수출상품에 채택한 무역장벽은 중·한 무역 수지의 적자가 확대된 주요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중·한 양국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⁵⁹⁾ 중국수입상품에 취한 경시성조치를 취소하는 것을 통하여 중·한 무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세품목을 줄이는 것을 채택하고 관세수준을 낮추며 비관세장벽을 취소 하는 방법 등 중·한 무역수지의 적자문제 해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업종협회는 기업과의 수출가격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하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반덤핑조사의 안건을 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 이 중국의 “완전시장 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여 중국의 반덤핑 및 경제 성 정책과 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줄이고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규칙을 운용 하여 한국과의 불합리한 제한 및 기술성 무역장벽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다. 정보교류의 강화 및 양자투자의 역량강화

첫째, 중·한 양자투자 정보시스템을 건립해야 한다. 내용은 투자환경, 관련한 법률 법규, 산업발전 및 기술, 기술표준, 시장수요와 중계업체 등이다.⁶⁰⁾

둘째, 해외진출 형태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비록 중국은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격 하게 늘어났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에 비하면 투자량이나 투자규모상에서 서로 차이가 매우 크다.

59) 유진석, 한·중수교 10주년 회고와 관세삼성, 경제연구소, 2007.8, pp43-45.

60) 이문형, “한국의 대중국 수출 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2009, pp5-6.

중국상무부의 최신수치 통계를 보면 2006년 말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389.487만 달러,⁶⁰⁾ 그러나 총투자는 39,0719만 달러이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한 중국회사는 “소규모 영업하는 것은 많지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적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일보로 하여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무역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불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프로젝트규모, 투자전략이나 투자지역, 투자구조 등 영역에서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특히 한국이 중국 서부지역과의 무역거래가 적고 양자무역이 중·한 무역중에서 비율이 매우 적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관련 기관은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이 서부대개발건설에 가입하는 것을 인도하며 경제발전이 가져올 거대한 이익을 함께 누리게 하여야 한다.

2. 한국의 해소방안

중국의 WTO가입, 서부대개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등은 한국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 후 예상되는 외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국간 무역마찰은 대 중국 수출을 저해하고 수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상당 폭 줄어들거나 적자로 역전될 수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한국의 흑자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적합한 진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⁶¹⁾

한국입장에서 대 중국 무역마찰을 완화시키려면 대 중국 교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 중국 수출의존을 해소해야 한다. 자세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60) 赵秀兰, “韩·中贸易构造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청구논문, 昌原大学大学院, 2008, p55.

61) 박성호, 립금속, 중·한 통상정책비교, 대명 2007, pp50-59.

가. 중국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주력수출상품의 개발

수출구조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품목에 대한 대 중국 수출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IC), 프린터 등 IT 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소재 및 부품수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부품 및 소재, 중간재공급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경쟁국의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차별화전략의 수립

한국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9.6%에서 2005년 11.6%로 매년 상승했으나 2006년 11.3%로 하락한데 이어 2007년에는 10.9%에 그쳤다. 2008년 대비 2009년 품목별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자동차부품, 신발, 타이어, 음향기기, 가죽모피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품목들의 점유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⁶²⁾ <표 5-1>

주요품목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품목	2008	2009
자동차부품	24.6%	12.2%
신발	21.8%	14.0%
타이어	3.4%	10.6%
음향기기	8.6%	14.1%
가죽모피	10.5%	8.2%
철강제품	16.2%	13.8%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010

62) 张颖, “中韩经贸关系的特点及对策研究”, 商场现代化, 2009年10月, 中旬刊总第55期, pp30-39.

중국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국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 중국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현지 한국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 요망된다.

그리고 최근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제품은 한국과의 경합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에 대한 시장잠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만제품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및 노하우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만에 의한 시장잠식은 더욱가속화될 것이다.

대만과는 석유화학, 화학섬유, 전자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의 대 중국주력 수출품목 전 분야에서 경합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무역창구를 통한 중국 화남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국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지방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다. 기술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 전환 노력

중국 취약한 분야인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완제품조립과 가공산업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격요소의 강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분야인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 수출증대를 위한 현지생산의 강화

중국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등 현재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대 중국 투자를 신중히 고려하여 현지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 중국 교역의 확대

중국이 세계유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기지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 내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 중국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⁶³⁾

특히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 분야와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내의 중국계 유통기업과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3. 중·한 공동협력해소방안

가. 중·한 공동 FTA 추진방안

중·한 양국정부는 무역불균형 축소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산업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중·한 양국은 통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상마찰예방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FTA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2001년 11월 아세안+3 회의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7억 명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이다. 중국-아세안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이 실현될 경우, 한국, 일본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된다.⁶⁴⁾

63) 김윤수,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2007, pp70-72.

64) 유진석, 한·중 수교 10주년 회고와 과제 및 가타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표 5-2> 아세안 지역의 FTA 진행상황

구상	협정체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제안(2001.11, ASEAN+3)
중국-아세안	중국이 아세안에 자유무역협정 제안(2000.11)
아세안자유무역지대	2002년 완전 실시
한-싱가포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2005)
한-일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완료
한-미국	2007.04.02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타결
한-ASEAN	2008.1.14 한 ASEAN 정상회의 계기, 한-ASEAN 서비스협정서면(싱가포르)
한-중	2008.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4 차 회의 개최(제주)
한-중-일	2010.5.30 한-중-일 제 3 차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자유무역 지역 고조(제주)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국은 중국과 아직 경제협력의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해야만 지역경제협력의 주류로 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한 양국의 무역마찰해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표 5-2 참조>.

모든 나라가 국제협상에서 항상 국익에 상응하는 이익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국의 의도와 전략을 철저히 치밀하게 분석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양국교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상품에 종류와 수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무역분규가 발생하고, 개별 상품별로 여러 가지 마찰과 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관건이다.

무역분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협상을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재조치나 무역보복 등의 방법은 한쪽에만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모두 불이익이 된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양국경제의 보완성과 협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양국의 교역상품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각 분야별로 볼 때 한국은 중국과 선진국과의 관계 즉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다르며, 발전도상국과의 관계와도 다른 일정한 기술수준과 발전규모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양호한 발전 전망을 가능케 한다. 새로운 세기에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나. 양국의 “win-win” 무역체계의 수립

한국에게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양국에게 뜨거운 이슈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대비해 무역마찰도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역마찰을 분석 고찰한 것은 향후의 국제협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⁶⁵⁾

중·한 양국은 결핍 및 경제발전의 상호보완성에 기인한 경쟁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더불어 양국의 경제 협력의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정책과 공동번영의 달성에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양국 경제관계가 질적으로 발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될 양국의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인 분업체계와 호혜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중·한 경제체계를 앞으로 건진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정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경합관계를 최소화하면 보완관계를 발전시 “win-win”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65) 최근 한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38.

제 2 절 중·한 공동통상협력의 방향

1. 기존의 중·한 통상협력현황

근대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발전의 장벽이 되어온 동서냉전체제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면서 그 결과 중·한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는 모든 인류에게 과거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에서 평화적 관계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중·한 우호 협력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이제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그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95년 5월 리펑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지적했듯이 중·한 관계는 단순한 우호협력차원을 넘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협력이 긴밀히 강화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양국의 경제적 협력 추세로 본다면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강대국으로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국의 덩샤오핑 사후에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응방안도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중국경제의 성장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제도화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분야까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수출보증 등에서 주는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대 중국 교역을 그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대중국 수출방향을 유도하여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상호이익 조정을 위한 무역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술무역은 자국의 수출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술협력은 상호보완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처럼 경합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한 기술구조는 협력가능분야가 적지 않다. 중국은 산업화가 필요한 기초기술과 미응용 첨단기술이 많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응용력과 비교적 발달된 마무리 기술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과도한 기술보안으로 협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을 의식한 양국간에 기술협력의 무조건적 기피는 다른 나라에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서로 기술이전으로 상호 경합관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선별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를 일단 협력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두 나라의 경쟁관계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기술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 의 진전에 따라 상호 보완성을 높여주는 분야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양국은 이런 분야에 대한 공동상품 생산체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두 나라의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주요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치열해 질 수 있는 수출경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쟁적 보완관계에 의한 상호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다.

또한 대중국 교역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상품구조를 중국이 수입하기를 바라는 에너지, 자원개발시설, 수송시설의 부품과 생산기술, 농업생산재, 농산물 가공시설, 공업자동화 설비 등의 분야에 맞도록 전환시키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려는 분야는 기초산업, 원부자재, 선진기술, 설비 등의 산업 현대화에 필요한 생산재에 한정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수입은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⁶⁶⁾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주요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등의 참여를 통하여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공급이 따르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에 주력해야만 한다. 중국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구매력이 확보된 고급품시장임을 유념하여 수출상품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성상 소비가치가 제한되어온 까닭에 고급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중국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1 차 산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 임가공, 기술협력 등 각종 방식에 의한 신규상품과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여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품목의 선정이 중요하다.

66) 刘新英, 中韩易贸易摩擦中的"大蒜事件"及其启示, 山东财经大学, 2005, pp44-50.

한편, 경제·통상분야에서 중·한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일, 미, 홍콩에 이어 중국의 4 번째 교역국이다. 대중 수출품은 주요 화학공업제품, 섬유, 전자 및 기기, 철강, 금속제품 등 공업용 원부자재 중심이다. 대중수입품은 주요 철강, 금속, 섬유, 전자 및 기기, 농림수산물이다. 대중국 투자현황은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인건비 및 광대한 시장 등의 투자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제 2 대 투자대상국이다.⁶⁷⁾

<표 5- 3> 한국 대중국 투자추이 (단위:건수 천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허가액 (투자 건수)	480.668 (552)	922.466 (901)	964.566 (1120)	1,926.32 (1474)	1,430.7 (1577)	1,723.5 (1420)	1,850.6 (1590)
투자액 (투자 건수)	347.712 (454)	605.328 (755)	547.097 (1024)	812.829 (1297)	1,009.7 (1400)	1,211.6 (1530)	1,350.7 (1647)

자료: 정길자·이상적, 인천과 중국의 경제교류평가 및 전망, 인천발전연구원, 2010

주: ()안은 투자 건수를 나타냄.

투자지역의 다변화는 수교 후 초기엔 산둥성(山東省) 및 동북성(東北省) 및 (동북삼성)東北三省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최근 상해(上海) 등 여타지역으로 투자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 투자 문제점 중 중국 체제 관련문제는 제도상 투명성 결여, 중앙-지방 또는 省-市 간 협의가 미흡한 점이다. 한국 기업의 문제로는 투자 규모의 영세성, 제조업 편중, 지역적 편중, 노무관리 미숙, 시장개척의 능력부족 등이다. 대중국 여행제한 해제 및 양국간 직항로 개설로 양국인의 여행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 여행 한국 관광객 수가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협력 부분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RFID의 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RFID 기술 표준화의 프로젝트 그룹은 국제 표준화 그룹을 통해 완료된 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eader 와 Reader 사이의 Air Interface, 데이터 문법 등을 국내에 수용하고, RFID-IPv6, WiBro 를 네트워크와의 연동분야의 표준 선

67)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23, 2006, pp45-50.

도를 모색하며, 유통을 비롯한 교통, 건설 등 분야별로 다른 RFID 코드를 연동하는 연계 표준의 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ISO 와 IEC 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기술 표준원과 양기관 간의 상호위원 참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한국전자거래 협회, 중국전자상거래협회(CECA) 는 “중·한 e-비즈니스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전 부터 RFID 분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도 점점 확대 되고 있는 바, EDCF(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은 빈곤퇴치, 환경, 여성, 보건, 교육, 인구 등 전 세계적 과제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국은 한국이다. 중국은 2005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대해 1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중으로 한국은 일본(15건), 미국(13건)을 상회하는 중국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의 대한 집중 수입규제는 대중무역흑자의 지속,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중국 수출 집중, 철강·유화 등 자본집약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외자유치 필요성, 중국 정부의 자국경제 대한 의존형 산업구조 시정 의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는 신문용지, 합성고무 등 피규제품목의 대중수출 대폭 감소, 피규제품목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하락 등 한국의 대중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조사 대응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덤핑마진을 부과 받은 경우 오히려 규제조치 실시 후에도 대중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의 규제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WTO 규정 내 합법적 규제수단인 반덤핑 조치를 향후에도 빈번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장의 속도조절 등에 따라 하반기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소재산업에 치중되었던 수입규제 대상품목도 2008년의 광섬유 조사개시를 계기로 첨단 기술집약형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중국전체의 무역 흑자를 위한 투자라는 대응논리 설득과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규제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노력, 수입규제 정보교환과 대중수출급증품목에 대한 정기점검 등 수입 규제 대응시스템 마련 등 사전예방 노력, 재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 한국무역

협회에서는 통상마찰사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2007에 이어 2008에도 각 1회씩 중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 많은 중국 상품 구매활동을 전개하여 대중무역 흑자 축소를 통한 중국의 통상압력 완화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⁶⁸⁾

유형별 비관세장벽은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마찰 해결절차, 수출실적 규정,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무역과 외환수지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달은 WTO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협정국은 다른 협정국의 조달업자에 대해서도 자국의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공급자에 대하여 특별 우대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조달은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참여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조달은 주로 기계와 전기 제품에 관한 것으로, 30개 조달기관들이 국가기관이나 기술혁신사업, 공공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조달해야 한다. 관련 조항인 GATT 1994제 3조 4절에 의하면, 다른 계약국의 영토 내에 수입된 계약국 영토의 상품은 그 국가의 국내법과 규칙에 의해 국내생산품과 차별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내국민대우는 WTO의 핵심 규약이며,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와 TRIPs도 내국민 대우를 WTO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 기업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외국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특혜대우를 받고 있다. 즉, 수입 상품은 중국 내에서 불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민대우에는 사실상 모든 분야가 해당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권한 또는 통신관련 분야의 중국산 장비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중국에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전망은 중국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지킬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상품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수용한 반면, 화학업체의 등록, 제품 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면 수용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는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문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규율과 규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그 규율과 규칙 이상위 법률과 일치하는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한 열람이 가능한지에 따라 투명도가 결정된다. 중국에서는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68) 윤도일, 중·한 무역 발전 방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2.

WTO가입 합의안에서 중국 정부는 실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법률과 규정 이행에 대한 중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 기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투명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환경에 대한 신뢰가 점차 제고되면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실적 규정이란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중국내 투자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량 또는 생산의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회사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수출실적의 규정을 준수하는 적용대상 업종은 항공,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반도체, 통신사업, 섬유산업 등 이다. 중국은 수출실적에 관한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자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용되었던 외국인 단독 투자업체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품의 의무사용과 관련한 WTO규정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국내 생산품을 사용 또는 구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업체에도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품목으로는 모든 가공 또는 제조분야가 이에 포함되며, 항공분야,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반도체, 통신사업 및 섬유산업 등에서 부품 의무사용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⁶⁹⁾

한편, 중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규정이 아직도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이 WTO가입을 계기로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을 철폐하더라도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크게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rams협정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외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해외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물량 통제를 금지하고 있다. 무역과 외환수지 균형에 관한 규정은 외국자본기업의 수출량에 의거하여 수입의 양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즉, 외국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외환의 흐름을 유입되는 외환의 수준에 맞추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69)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한국 대 중국 직접투자 동향”, 해외정부, 2009.

중국은 1996년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할 방침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역과 외환수지 균형 규정은 아직도 중국의 외환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규정에는 모든 부문이 해당되는데, 특히 전자제품, 기계, 반도체, 통신, 섬유산업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수지의 균형에 대한 제약이 제거되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중국 WTO가입 후 중·한 통상협력의 방향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입관세율이 인하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도 자유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연평균 기준으로 수출이 20억 달러 늘어남에 따라 상품수지가 11억 달러에 달했으며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수지도 약 2억 달러 개선되어 경상수지가 13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및 개방 가속화에 따른 소득 증대로 큰 폭의 대중국 수출 신장이 기대되며, 대중국 수출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 농산물 수입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에 대한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 투자여건의 개선으로 제조업의 투자규모가 대형화하고 투자형태 및 투자지역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 정보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의 진출도 늘어나는 등 대중국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외국기업들이 투자지역을 다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70)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42.

석유화학, 철강, 섬유류, 전자의 경우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나,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완제품 간 교역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평적 교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무역, 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중국 교역에 있어 서비스 무역에 대한 진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진출분야도 확대되어 소규모 요식업, 관광업, 무역업 등에서 경영 컨설팅, 부동산 개발, 통신, 물류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 등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가전 및 전자제품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터넷 콘텐츠사업, 부가가치 통신사업, 자동차 할부금융사업 등 새로운 사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신규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WTO가입 이후의 관세율 인하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효과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중·한 경합품목을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서 4~6억 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6~2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인하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고, 경쟁적인 가격인하 속에서 수출채산성이 급속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주종 수출품은 중간재와 시설재 위주인데 반해, 최종소비재를 위한 유통망이 취약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중국내 또는 제3국에서 수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국내 기존 기업을 무너뜨리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중 투자기업이 중국산 원자재 구매를 선호할 경우, 우리의 대중 원자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도 가능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한 교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할 때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IMF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나,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출시장이 예상보다

달리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¹⁾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각종 무역장벽이 사라져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반면, WTO협약에 의하여 중국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오던 중국의 수출기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현재 광범위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여 오고 있고, 중국의 광둥성(廣東), 복건성(福建) 지역에 국내외의 유통 및 제조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업체 진출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 3성 대신 신흥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에 한국의 에너지 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양국은 중국의 서부대개발사업에 있어서 중·한 양국은 러시아 중부지역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협력을 하였고, 중국내 한국기업의 화력발전소 건설과 투자비에 대한 구상무역형태인 석탄수입으로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에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며 이러한 투자의 실질적 결실은 양국이 긴밀한 협력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한국산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미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의 점유율 1위 제품도 일본, 대만,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국시장 내 4,600여개 품목의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산 가운데 점유율 1위인 품목은 337개 불과해 일본(1,272개)의 25%수준에 그치고 미국(685개), 대만(650개)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점유율 1~5위 품목수의 경우 일본이 3,505개로 가장 많았고, 대만 2,839개 미국 2,08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기기, 철강에 집중되어 중국의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방향이 한국의 주력산업과 동일하게 육성될 가능성이 높아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중국시장 규모가 큰 품목과 경쟁국 추월 가능 품목, 국내 과잉설비 품목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수출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⁷²⁾

한국 반도체의 대중국 기술경쟁이 중국 내수기업보다는 약 10년,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보다는 2~3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선 석유화학, 철

71) 저우예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55.

강 등은 약 10년, 정밀화학과 냉동 공조(에어컨) 등은 4-5년, 건설·공작기계는 약 3-5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특정상품은 대중국 기술우위에 있으나 중국의 추격속도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16개 업종을 선정,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업종별 기술력 분석 및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상 업종은 올해중·소형차와 건설기계, 반도체, 디지털 가전, 조선, 공작기계, 여성의류, 정밀화학등 8개 등 8개 업종을, 2010년에는 석유화학부품과 소재, 영동공조, 철강, 제지, 핵심전자부품, 휴대폰, 포스트PC 등으로 지식경제부는 2010년까지 업종 당 1억 6,000만원씩 총 13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간 합작투자를 비롯한 전략적 제휴와 생산시설이전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 대륙시장에 한차례 투자열기가 일게 되리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향후의 외자 정책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밝혀진바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중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협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⁷³⁾

72) 구종순, 허은숙, 무역결제, 서울: 박영사, 2007, p462.

73) 서동혁, "우리나라 주요산업 대중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pp 20-24.

제 6 장 결론

중·한 양국의 경제교류관계는 1992년 공식적인 수교 이후 18년의 짧은 기간 동안 밀집해 졌으며, 중국은 상승한 경제력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괄하는 중화경제권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교류관계는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고의적인 통관지연, 대금결제 지연, 클레임과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등 통상마찰의 주요 요인들 때문에 무역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중·한 양국은 교역관계의 확대를 통해 균형상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예방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그 출발점은 바로 계약체결시부터 마찰발생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철저히 검토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마찰의 발생 시에는 양국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된 마찰사례들을 참고하여 통상마찰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한 통상 마찰의 해소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장벽의 철폐와 쌍무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한 통상마찰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무역보호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특히 중국의 제품에 대하여 차별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의 철폐가 필요하다.

둘째, WTO를 통한 통상마찰해결이 필요하다. 중·한 양국의 무역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되는 상품 수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개별상품들에 대한 마찰 발생시 WTO를 통해 마찰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수출지도와 출혈수출의 방지가 요구된다. 중·한 통상무역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은 공동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넷째, 무역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양국의 정부기관은 응당 무역협력 체제를 견지하여야 하며,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형성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의 도덕성과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의존성을 저해하는 관례들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다섯번째,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한 분업구조가 필요하다. 중·한 양국 무역균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한 분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을 표적 시장으로 설정하여 고가, 고기능의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한 무역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업 글로벌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기업 국제화로 발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업의 경영층과 정부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또한 양국간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리적 환경, 인문 환경, 경제 환경 등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중·한 교역의 장벽은 철폐하여야 한다.

21 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은 WTO 가입하고 약속대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한간 교역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속도에 힘입고 있다.⁷⁴⁾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내부적으로 거대한 국제수지와 2 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통상마찰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통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소비는 급감했으며, 경기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제조를 빈번히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마찰으로 이어졌다. 전세계에 무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적인 분석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통상정책의 미래전망은 중·한 통상마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균형무역의 추진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흑자 폭이 대폭 감소될 경우,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시정요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이 앞

74) 최근 및 년에 중·한 간 무역교역액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48.

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입대체정책 수단으로 반덤핑 규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전략산업이 한국의 수출주도산업과 흡사하고 향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어 중·한 통상마찰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이를 더욱 자기중심적 판단에 이르게 하여 안전인수식의 배타주의, 보호주의 무역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모든 통상 마찰은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생겨나는 것이므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이익이 생긴다면 더 많은 통상마찰이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기존의 무역장벽이 빠른 속도로 철폐되는 상황에서 반덤핑 제도를 주요 통상정책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 불균형에 의한 각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입을 증시하는 균형 무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내수시장 개발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다. 이는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자본과 기술로 인하여 과잉생산된 상품을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에 사용함으로써 무역불균형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서부개발을 통하여 동·서 간 불균형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수출의 다변화를 통하여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수출을 분산하고, 고부가 첨단 제품의 생산, 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출의 무역불균형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무역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중국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의 반덤핑규제에 대비하여 특정상품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한 수입규제 가능성 검토, 동종기업과 사전조율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등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덤핑조사에 임해서도 무역협상 전문가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인 중·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마찰해결에 대한 WTO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중·한 자유무역 협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중·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협상에 임함에 있어 서로 적절히 양보하고 절충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동반자로서 양국이 내딛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가 세계에 진출하고 주도권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장은 아직 많다.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 경쟁관계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중·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발전하여 협력자로서 공생을 도모한다면 한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같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구중순, 허은숙, 무역결제, 서울: 박영사, 2007, pp462.
- 김권형, 한·중 농산물 교역 확대 방안, 농수산물 무역정보, 2008, pp51-52.
- 김부찬, 中華經濟圈의 形成과 韓中通商關係에 대한 研究, 2008, pp265-308.
- 김현중, 왜 FTA 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 제 2 권, 2008, pp3-9.
- 농림부, WTO 무역 분쟁-농산물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08, pp33-37.
-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WTO 가입후의 중국의 발전과 리스크, 한국무역협회, 2007.
- 박성호, 립금속, 중·한 통상정책비교, 대명 2007, pp50-59.
- 송유철, 한·중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2007, pp31-34.
- 쌍한리, 취창연, “중·한 무역 문제 심층분석”, 2008, pp1-2.
- 양평섭, 중국의 WTO 가입 5 주년결산, KIE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58.
- 운도일, 중·한 무역 발전 방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2.
- 유진석, 한·중 수교 10 주년 회고와 관제삼성, 경제연구소, 2008, pp20-31.
- 유진석, 한·중 수교 10 주년 회고와 과제 및 가타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이문형, “중국 대한국 수출 분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9, pp5-6.
- 이재기, 현대한국무역론, 청목출판사, 2008, pp56-60.
- 임영모, 중·한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5-9.
- 임정빈, 한·중 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p46.
-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2010, p197.
- 저우예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pp55.
- 전영춘, “한·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33-36.
- 조영정,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9, pp220-230.
- 최근 한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38.
-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42.
-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48.
-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23, 2006, pp45-50.
- 현대경제연구원, “대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과 전망”, 2008.11.

- 장문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CFE Report No.103, 2009, pp19-22.
- 김윤수,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7, pp70-72.
- 나승희, 韓·中貿易分爭事例研究-마늘과동사레를 중심으로, 승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 pp25-26
- 방청록, 한국의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아태연구 제 16 권 제 1 호, 2009, pp84-85.
- 서갑성,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전개에 따른 중·한무역 활성화방안, 한국비즈니스리뷰, 제 2 호, 2008, pp76.
- 서동혁, "우리나라 주요산업 대중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pp20-24
-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 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52-53.
- 최정은, 중국의 대한 반덤핑 반덤핑조치 운용 연구 1997년-2007년반덤핑 사례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23-35.
-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한국의 2008년 대 중국 직접투자 동향", 해외 경제·투자 정부, 2009.

<중국문헌>

- 蒋晓栋, "关于中国倾销立法的比较研究", 法律出版社, 2009. p34.
- 金乐琴, "中韩两国互相直接投资: 挑战与对策", 经济研究导刊, 2008年第11期, p34.
- 李光辉, "通过合作来促进中韩经济贸易的发展", 对外经贸大学出版社, 2007, p3.
- 李华, 郭义等, "本期主题: 关注中韩贸易不平衡", 经济论坛, 2008.6. pp20-30.
- 鲁丹萍, 对国际贸易壁垒的相关研究, 人民出版社, 2009, p116.
- 宋世方, 贸易保护政策的新政治经济学分析, 山东经济出版社, 2008, pp45-50.
- 马常娥, "中韩贸易逆差", 黑龙江大学出版社, 2008.5. pp33-45.
- 朴光姬, "中韩建交15年来双边贸易的发展及其存在的问题", 当代亚太, 2007年 第7期, pp23-30.

赵秀兰, “韩·中贸易构造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청구논문, 昌原大学大学院, 2008, p55.

张汉林, WTO 主要成员贸易政策体系与对策研, 经济科学出版社出版, 2009, p34.

张颖, “对于中韩贸易关系的特征和对策研究.” 商业现代化杂志, 2008, p3.

孙霖, “关于中国贸易保护政策的政治限制研究”, 云南财经大学出版社, 2008, p24.

刘新英, 中韩易贸易摩擦中的“大蒜事件”及其启示, 山东财经大学, 2005, pp44-50.

中国商务部, 中韩经贸关系发展现存问题及对策建议, 中国商务部国际经济贸易合作, 研究院课题组, 2009, pp63-71.

“中国加入 WTO 以后, 中国贸易摩擦变得深化的原因和对策”, www.chinaknock.com.

“中国接受反倾销调查的现状” 中国贸易规则协会, www.cacs.gov.cn.

中国工业汽车协会 2010

《中韩双边贸易存在问题及其对策》

《中国仲裁法》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中国民事诉讼法》 每日经济新闻, 2008.12.28

<인터넷 자료>

<http://www.mofcom.gov.cn>(중국상무부)

<http://www.cacs.gov.cn>(중국무역구제협회)

<http://www.koreaemb.org.cn>(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las.go.kr>(한국인정기구)

<http://www.customs.gov.cn>(중국관세정부)

<http://www.ktc.go.kr>(한국무역위원회)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standard.go.kr>(무역기술장벽정보)

<http://www.newsva.co.kr>(아시아경제신문)

<http://www.chinaknock.com> (UNI Trade)

<http://www.stats.gov.cn>(중국국가통계국)

ABSTRACT

A Study on the Solution—Measures of Trade Fric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Luo Wenmao(罗文茂/라문무)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ains current state and changes on trade policy of both China and Korea to examine trade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investigate their causes, which has suggested the corresponding policies to alleviate such frictions.

After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ey increase their dependency of trade year by year, and in 1999 China became the third largest foreign trade partner of Korea follow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nd Korea also became the third largest trade partner of China.

The China's entry into WTO not onl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international competence but also may cause changes in world trade, industry structure, and the foreign economy policy. In addition, it has been affecting the trade relationship with the US, EU, and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rade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forced to in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trade expans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is developing swiftly. By 2010, Korea has become China's fifth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investment country in China while China in Korea's overseas investment is also growing. So, the new economical role and new commercial policy of China and Korea should perform.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China has been continuing to introduced foreign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and China's economic develops with amazing speed, and technical strength of domestic enterprises have accumulated a certain degree.

As a result, the amount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has increased clearly year by year and the trade structures are also changing, at the same time the trade frictions between each other are greater than before. For example, the garlic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2000, and some other examples in all aspects.

Therefore, how to solve the trade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is the first challenge faced by the two governments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government, enterprises or individuals should not be ignored and more efforts should be paid in order to resolve the increasing trade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xchange of understanding between two countries; culture, economic and other exchanges can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remove unnecessary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so that the trade efficiency can be improv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for each individual.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issues is an important part of trade and a prerequisite to guarantee the normal development of trade.

Through the analysis above, China and Korea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new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Finally, I personally oppose any country to take retaliatory actions to resolve trade friction problems and consensus through negotiation should be advocated.

From now on,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al cooperation of the two countries, these issues should be concerned and those factors should be found. Solving the trade frictions between the countries is the major problem that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in 21st century.